

2026

Vol.47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

코스카 레터

| KOSCA MESSAGE | KOSCA NEWS | KOSCA INFO | KOSCA TODAY | KOSCA TOGETHER |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뉴스레터

코스카레터

2026 Vol.47

발행인 회장 김형겸
 기고/투고 kosca21@kosca.or.kr
 편집/발행처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디자인/제작 거북인쇄공사 (051. 808. 5571)
 일러스트 거북인쇄공사



표지이야기

2026년 새로운 도약을 향한
 부산 전문건설인의 시작



KOSCA MESSAGE

04 신년사

1.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회장 김형겸
2.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 윤학수
3.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4. 부산광역시시장 안성민
5.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KOSCA NEWS

09 협회소식

- 제회의 및 행사
- 회원사 수주지원 및 업역 확대를 위한 간담회 활동
- 사회공헌활동

23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제도개선사업

25 특허 및 신기술 소개

- 2025년 4/4분기 건설신기술 현황



KOSCA INFO

- 26 **회원 스포트라이트**
- 섬진건설(주) 대표이사 박종열
- 28 **건설산업정보(법령개정) PART1**
- 30 **건설산업정보(회원사안내) PART2**
- 51 **건설 관련 유권해석 및 판례**
- 54 **전문가칼럼**
- 건설관련 법 상담
- 세무관련 법 상담

KOSCA TODAY

- 56 **회원사 현황**
- 부산전문건설업체 등록현황
- 회원사 변동사항(상호, 대표자변경)
- 전입, 전출업체 회원사 명단
- 부산시회 신규회원 현황
- 59 **협회·조합 소식**
- KOSCA 중앙회 업무단신
- 우리시회 2026. 1/4분기 주요일정
- 전문건설공제조합 소식
- 60 **2026년 건설업 교육**
- 교육일정 안내
- 62 **건설현장 안전관리 노하우**
-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길잡이

KOSCA TOGETHER

- 64 **부산의 명소**
- 도시와 자연이 가장 부드러운 선으로 맞닿는 곳, 장산
- 66 **세계의 아름다운 건축물**
- 사막의 돌에 새겨진 시간 페트라 유적
- 67 **소통하는 문화공간**
- 힐링 무비
- 힐링 북
- 69 **오늘의 트렌드**
- 스몰 하우스와 슬세권, 주거 패러다임의 대전환
- 70 **글로벌 이슈**
- FSD(Full Self-Driving) 완전 자율주행
- 71 **슬기로운 생활 꿀팁**
- 매일의 질서를 만드는 현관 1m의 힘
- 72 **하루 5분 건강**
- 건강습관 /건강음식
- 74 **독자와 함께**
- 회원사 참여 마당(독자의견 및 퀴즈)



김형겸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회장

회원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 확고히 자리 잡는 뜻 깊은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전문건설인 여러분!

적도마의 강인한 기운이 깃든 2026년 병오년(丙午年)의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회원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웃음이 가득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나아가 희망과 용기로 채워지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침체된 건설경기와 건설산업 생산체제 개편에 따른 일감부족, 원자재 가격 상승, 안전 관련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우리 전문건설업계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으며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건설현장을 지켜내며, 부산의 도시 경쟁력과 국가 기간산업을 떠받치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회원사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0년간 우리는 百折不屈(백절불굴, 백번 꺾여도 굽히지 않는다)의 자세로 수많은 난관 속에서도 축적된 기술력과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력을 여러 차례 증명해 왔습니다.

이러한 저력이 있는 만큼, 지금의 어려움 또한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2026년 병오년은 붉은 말이 힘차게 질주하는 해로, 다시 한 번 도약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해라고 합니다. 이에 우리시회는 '새로운 길을 열어 미래를 창조한다'는 開新創來(개신창래)의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도약과 변화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첫째, 회원사 권익 보호와 일감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중앙회 및 전국 시·도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건설산업 생산체제의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공사비 현실화, 하도급 불공정 관행 개선, 불합리한 계약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관계기관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상생과 협력의 건설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와 구·군, 부산시교육청, 각종 공사·공단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원·하도급사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업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협회가 되기 위해 사회공헌 활동 등 전문건설업계의 공공성과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회원 서비스의 질을 한층 더 높ی겠습니다.

건설 관련 교육과 정보 제공은 물론 법률·경영 지원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반영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자체 운영 중인 「회원고충상담센터」를 중심으로 회원사 맞춤형 지원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우리시회는 회원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어려움을 듣고, 가장 현실적인 해답을 찾아내며, 가장 강력하게 회원사의 권익을 지키는 협회로 거듭나겠습니다.

지난 40년이 우리 전문건설업계가 지역 건설산업의 든든한 기둥으로 성장해 온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40년은 변화된 환경 속에서 우리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증명해 나가는 또 하나의 도전이자 새로운 기회的时间이 될 것입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 붉은 말의 뜨거운 기운이 회원 여러분 모두에게 힘과 용기를 전해주고, 회원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 확고히 자리 잡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으로, 언제나 변함없이 협회를 믿고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가정마다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전문건설인이 존중받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전문건설 가족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전문건설 가족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전국 시·도회와 업종별협의회, 그리고 6만 전문건설인이 함께한 창립 4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건설산업을 책임져 온 핵심 주체는 바로 전문건설임을 널리 알렸습니다.

우리는 반세기 동안 건설업의 균형을 지키며, 직접시공을 통해 품질과 안전을 책임져 왔습니다. 축적된 기술과 경험은 오늘의 건설업을 떠받치는 단단한 주춧돌이 되었고, 앞으로의 국가정책이 더욱 충실히 담아내야 할 중요한 가치입니다. 2026년은 그 가치를 토대로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과제들이 분명한 결실로 이어지는 중요한 1년이 될 것입니다.

협회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문-종합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작동하는 구조를 정착시키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자리잡도록 관련 제도 개선과 입법과제를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적정공사비 확보와 예정가격 현실화를 통해 책임시공이 정당한 대가로 이어지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충분하지 못한 공사비로 품질과 안전을 요구받는 불합리한 관행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하도급 거래질서를 더욱 투명하게 다듬는 노력도 계속하겠습니다. 최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는 대금체불의 위험을 안고 공사를 해왔던 전문건설의 오랜 호소가 제대로 응답받은 결과입니다. 협회는 지난 10월 시행된 부당특약 무효화 법률과 더불어, 우리 힘으로 만들어 낸 하도급 안전망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실적신고·시공능력평가 및 기능사 관리 등 정부위탁 행정 업무의 디지털 기반을 강화해 회원 체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회원과의 소통창구인 코스카톡을 통해 애로사항을 살피고 회원의 경영활동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전문건설 가족 여러분,

현장을 가장 잘 아는 회원 여러분의 공감과 참여가 더해질 때, 전문건설은 더욱 바른길로, 더욱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이 추진력과 생동감을 의미하듯이, 대한전문건설협회는 2026년 한 해에도 전문건설인이 존중받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회원만 바라보고, 회원과 함께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새해에도 부산광역시가 협회의 굳건한 파트너가 되어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회원 여러분!!

희망찬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만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해 병오년은 붉은 말띠의 해입니다. 한 번 달리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는 말처럼, 2026년은 그동안 축적해 온 부산 전문건설인의 에너지가 힘차게 분출하며 전문건설산업 대도약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 나가는 한 해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동안 부산의 건설 발전은 언제나 묵묵히 현장을 지켜온 전문건설인 여러분의 땀과 헌신 위에 쌓여 왔습니다.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여건과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도 지역 일자리와 지역경제 버팀목 역할을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부산은 해외관광객 300만 시대, 상용근로자 100만 시대, 국비 10조 시대를 활짝 열며 도시 성장 엔진에 강력한 불을 지폈습니다. 기업투자도 크게 늘었고 미래를 선도할 첨단 신산업이 속속 들어오며 경제체질이 젊고 유연하며 역동적인 구조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비수도권에서 처음으로 열린 부산 건설 미래 비전 컨퍼런스를 통해 부산시, 건설대기업과 부산전문건설협회가 함께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모색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부산시는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인프라 확충과 도시 재창조 사업을 힘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산의 교통혁명을 이끌 BuTX 건설도 본궤도에 오를 것이고, 동 서 균형발전과 혁신성장 거점 역할을 할 서부산 행정복합타운이 공사를 시작합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이전을 계기로 글로벌 해양 도시로 빠르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수의 역점사업을 추진하면서 원도급사와 지역전문건설기업이 협력파트너로서 동반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행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안전과 품질, 환경과 상생을 중시하는 ESG 경영 기조에 맞춰, 공공공사의 안전관리 강화와 탄소중립·친환경 건설 확산에 협회와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디지털 기술과 스마트 건설 도입, 숙련 기술인력 양성 지원 등을 통해 중소 전문건설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가 창의와 혁신으로 또 한 번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회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노고와 열정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부산시와 협회가 굳건한 파트너가 되어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합니다.

2026년 새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마다 늘 건승과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설업계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문건설인 여러분, 그리고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 붉은 말의 해,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과 기대 속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말이 지닌 역동성과 힘찬 기운처럼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의 노력이 주마가편의 결실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급등, 각종 제도 변화 등으로 건설산업 전반이 큰 어려움을 겪은 한 해였습니다. 특히 지방 건설업계는 경기 침체의 영향을 현장의 최일선에서 체감하며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해주신 전문건설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역시 환율과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건설 여건이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지역 경제의 싹틔움이라 할 수 있는 건설산업의 회복이 곧 한국 경제 전반의 재도약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합리적인 규제 완화,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방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간다면 지역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함께 현재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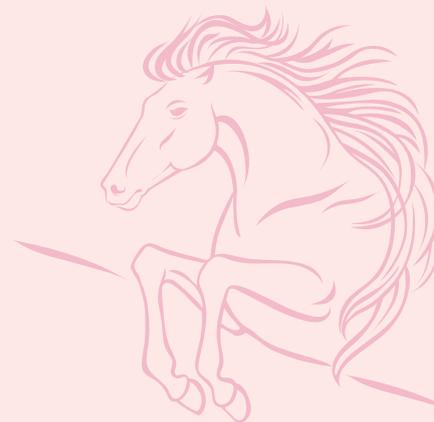
부산광역시의회는 건설산업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건설업의 활로를 모색하고, 하도급 참여율 제고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건설산업의 발전이 지역 경제의 근간임을 깊이 인식하고, 업계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새해에는 희망과 도전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모든 회원사의 도약과 번창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성민

부산광역시의장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

부산건설산업의 가치가 지역의 희망찬 미래로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희망찬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KOSCA 부산 회원 여러분께 붉은 말의 힘찬 기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변화와 도전의 시대에도 흔들림 없이 부산의 산업 현장을 지켜주신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김형겸 회장님과 2,500여 회원사, 그리고 부산 지역 모든 전문건설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건설산업은 단순히 도시의 외형을 만드는 일을 넘어, 시민의 일상과 삶의 질을 결정짓고,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한 성장의 핵심 토대로서 도시 가치를 창출합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는 이러한 전문건설업계의 권익을 증진하고 전문건설기술 향상과 제도 선진화에 힘쓰며 지역 경제 발전에 공헌해 왔습니다. 그 노력의 과정과 성과를 전하고,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부산전문건설 소식지 『코스카레터』가 새해에도 변함없이 지역 건설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부산 전문건설인의 소통과 화합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에 있어서도 교육 환경 구축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간의 혁신이 교육 혁신의 출발점이라는 믿음으로 우리 교육청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 조성과 미래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의 전환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AI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인프라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현장에서 땀 흘리며 신뢰와 희망을 쌓아 온 부산 전문건설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와 회원사의 힘찬 도약과 부산 건설산업의 밝은 내일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회의 및 행사

01

2025회계연도 제3차 대외정책위원회의

부산시회(회장 김형겸)는 10월 13일(11:00 / 전문건설회관) 대외 정책위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회계연도 제3차 대외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회 전문건설의 날」 포상자 선정 결과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부산광역시 2025년 「자랑스러운 건설인상」 포상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자문사항을 논의했다.



02

2025회계연도 제5차 회장단회의

부산시회(회장 김형겸)는 10월 14일(11:00 / 우리사회 사무처 회장실) 회장단 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회계연도 제5차 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업종별 등록현황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대외 정책위원회 자문내용을 토대로 부산광역시 2025년 「제1회 전문건설의 날」 포상 후보자를 결정했다.



03

2025년 제1회 전문건설의날 기념식

부산시회(회장 김형겸)는 10월 15일(10:30 / 인스파이어 리조트 볼룸) 우리사회 임원 및 대표회원 30명(전국 9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중앙회에서 개최하는 「제1회 전문건설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행사에는 협회 임원과 회원사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관계자, 국회의원 등 정·관계 인사, 포상자, 건설 분야 유관 단체장 등이 참석했으며, 전문건설업의 지난 40년을 되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로 성황리에 진행됐다.



04

2025회계연도 제5차 기획혁신위원회의

부산사회(회장 김형겸)는 10월 20일(11:00 / 전문건설회관) 기획혁신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회계연도 제5차 기획혁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원 및 대표회원 연수회 일정, 창립 40주년 부산사회 특별포상 관련 포상, 연수회 기념품 및 경품과 참석 독려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05

2025회계연도 제4차 대외정책위원회의

부산사회(회장 김형겸)는 10월 22일(11:00 / 전문건설회관) 대외정책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회계연도 제4차 대외정책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산광역시 2025년 「자랑스러운 건설인상」 포상 후보자 추천명단을 보고하고 창립 40주년 기념 우리사회 특별포상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06

2025회계연도 제6차 회장단회의

부산사회(회장 김형겸)는 10월 22일(11:00 / 우리사회 사무처 회장실) 회장단 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회계연도 제6차 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업종별 등록 현황과 부산광역시 2025년 「자랑스러운 건설인상」 포상 후보자 추천 결과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창립 40주년을 기념한 임원 및 대표회원 연수회 추진계획 및 일정, 우리사회 특별포상 포상후보자 결정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07

2025회계연도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

부산사회(회장 김형겸)는 10월 29일(14:00 / 범일5동 매죽지마을) 대표회원 및 회원사, 협회 직원 총43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김형겸 회장은 “지역의 소외계층과 어려운 이웃에게 부산전문건설인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돼 조금이나마 훈훈한 연말을 보낼수 있도록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활동을 진행하게 됐다”며, “함께 뜻을 모아 참여해 주신 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과 협회 사무처 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나눔과 봉사를 통해 협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의 동반자로서 공동번영의 가치를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8

창립 40주년 기념 임원 및 대표회원 연수회

부산사회(회장 김형겸)는 11월 18일~19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거제 일원에서 「창립 40주년 임원 및 대표회원 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회에는 임원 및 대표회원 120여명이 참석해 협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하고, 회원 간 교류와 단합을 도모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한화오션(주) 산업시찰로 공식일정이 시작되었으며, 참가자들은 국내 조선해양산업의 기술력과 생산현장을 직접 둘러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후 소노캠거제리조트에서 「리더십과 마음을 움직이는 관계의 법칙」, 「자산관리 전략과 부를 지키는 상속증여 절세법」에 대한 특강이 진행되었으며, 거제파노라마케이블카 및 거제식물원 문화탐방을 통해 회원 간 교류와 화합을 더욱 돈독히 다졌다.



이날 부산사회 김형겸 회장은 “창립 40주년을 맞아 임원 및 대표회원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번 연수회는 우리 협회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며, “회원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이 모여 부산 전문건설업의 미래를 밝히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09

2025회계연도 모니터 회의

부산시회(회장 김형겸)는 11월 25일(11:00/서면 이리스 웨딩홀 14F) 부산시회 모니터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회계연도 모니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모니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우수 모니터에 대한 포상과 새롭게 위촉된 14명에게 위촉장이 수여되었으며, 부산 전문건설 모니터 활동에 대한 추진 경과 보고와 함께 전문건설업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부산시회 김형겸 회장은 “협회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설문조사는 회원사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발굴과 제도개선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회원사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 건설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모니터 활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10

2025회계연도 제5차 대외정책위원회의

부산시회(회장 김형겸)는 11월 26일(11:00 / 전문건설회관) 대외정책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회계연도 제5차 대외정책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회 제41회 정기총회 포상대상자 추천과 관련하여 포상 추천자들에 대한 심의 등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11

2025회계연도 제7차 회장단회의

부산시회(회장 김형겸)는 11월 26일(13:00 / 우리시회 사무처 회장실) 회장단 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회계연도 제7차 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업종별 등록 현황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중앙회 제41회 정기총회 포상대상자 추천과 관련하여 대외정책위원회의 자문결과를 검토하여 회원사, 외부인사, 단체 및 직원에 대한 추천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창립 40주년을 기념한 전문건설인 조찬 경영포럼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12

창립 40주년 전문건설인 조찬 경영포럼

부산사회(회장 김형겸)는 12월 8일(07:00 / 부산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 「부산광역시 박형준 시장 초청 전문건설인 조찬 경영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경영포럼은 부산광역시 박형준 시장, 건설대기업 영남지사장, 회원사 임·직원 및 부산사회 경영자문단 등 2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부산광역시 박형준 시장이 강연자로 나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의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하여 참석자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부산사회 김형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박형준 시장님의 강의를 통해 부산의 미래 전략을 깊이 이해하고, 우리 전문건설인들이 그 비전 속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지 함께 모색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으며, 강연이 끝난 후 감사의 뜻으로 박형준 시장에게 ‘인물스케치 액자’를 전달했다.

13

2025회계연도 신규회원 간담회

부산사회(회장 김형겸)는 12월 9일(13:30 / 이리스웨딩앤뷔페) 2025년도에 협회 회원으로 가입한 신규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회계연도 신규회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형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신규회원으로 가입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협회가 전문건설업체의 업권보호와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자문경영단 및 회원고충 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제도 개선과 회원사의 권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협회와의 소통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규회원들을 위해 협회의 역할과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와 신고사항 등이 포함된 “전문건설업 신규회원 실무교재” 책자를 배부하고, 왕재성 사무처장이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14

2025년 하반기 건설 분야 전문가 법률상담 등 무료자문 실시

부산시회(회장 김형겸)는 12월 18일(14:00 / 부산 전문건설회관 4층 회의실) 회원사의 고충 해결과 당면한 애로사항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돕고자 「2025년 상반기 건설 분야 전문가 법률상담 등 무료자문」을 개최하였으며, 법률, 노무, 세무회계, 신기술·특허 분야 20건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다.

이날 상담에서는 부산시회 이윤근 자문변호사가 발주자 및 원도급사와의 분쟁에 대한 법적 대처방안 등에 대해 상담했으며, 여찬모 자문노무사로부터 임금명세서 작성방법 및 교부,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관리, 4대 사회보험 및 퇴직금 분쟁 등 노무 분야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상담이 이루어졌다.

부산시회는 그 외에도 회원사 재무상태 등과 관련하여 문상용 공인회계사가, 신기술, 상표등록 등에 대해 김성현 변리사가 유선으로 전화상담을 진행하여 회원사의 고충을 해결해 주었다.

특히, 부산시회는 올해 3월 “회원고충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상시 운영하면서 적극적으로 회원사의 법률과 노무 등의 법률 관련 고충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11월말 기준 160여건에 대한 민원을 해결한 바 있다.



15

2025년도 건설(전문)공사 실적신고 및 입찰실무(적격심사) 강습회

부산시회(회장 김형겸)는 12월 23일, 24일 양일간 부산상공회의소 1층 대강당(부산진구 범천동 소재)에서 회원사 임·직원 7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건설(전문)공사 실적신고 및 입찰실무(적격심사) 강습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습회에서는 부산시회 이수철 실장의 실적신고서 유의사항, 김영혜 경영정책부장의 통합실적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며, 전자입찰교육원 채석민 강사의 건설공사 입찰실무(적격심사)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졌다.

한편 이날 참석하지 못한 회원사를 위해 강의 교육교재를 인터넷 홈페이지(www.kosca21.or.kr) → 회원전용공간 → 교육교재에 게재하여 회원사에서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16

2026년 신년인사회

부산사회(회장 김형겸)는 1월 5일(11:30 / 이리스웨딩뷔페 14층 골드룸) 대표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찬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이하는 「2026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부산사회 김형겸 회장은 “침체된 건설경기와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일감부족, 원자재 가격 상승, 안전 관련 규제 강화 등으로 그 어느 때 보다 힘겨운 한 해를 보냈으나, 우리는 지난 40년간 수많은 난관 속에서도 축적된 기술력과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력을 여러 차례 증명해 왔다.”고 말하며, “2026년 병오년은 새로운 길을 열어 미래를 창조한다는 開新創來(개신창래)의 마음가짐으로 한 발짝 더 성장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회원사 수주지원 및 업역 확대를 위한 간담회 활동

01

202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전문건설업 등록업무 담당관 간담회

부산시회(회장 김형겸)는 11월 6일(16:30 / 더파티 프리미엄 해운대점)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청 건설과 전문건설업 등록업무 공무원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전문건설업 등록업무 담당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부산시회 이수철 건설정책실장이 「부산전문건설 사업자 보호를 위한 협조사항」을 설명하고, 부산시회 자문세무사인 더행세무회계 문상용 세무사가 「전문건설업 기업진단(실질자본금)」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전문건설업 등록 절차와 행정실무 협조사항, 제도 개선 의견 등을 폭넓게 논의하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앞으로도 부산시회는 각 구·군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문건설업 등록 및 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현장 애로사항 공유를 통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 모색 등 건전한 전문건설산업 환경 조성과 회원사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02

2025년 부산건설 미래비전 컨퍼런스 부산광역시와 공동개최

부산시회(회장 김형겸)는 11월 14일(17:30 / 파크하얏트 부산호텔 33층) 부산광역시와 「2025년 부산건설 미래비전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

글로벌 허브도시 비전 완성을 위한 건설대기업 CEO와의 전략적 소통 및 부산지역 전문건설사와의 동반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개최된 이번 컨퍼런스에는 대우건설 정원주 회장(한국건설경영협회장), 계룡건설산업 윤길호 대표이사, 우미건설 배영한 대표이사 등 건설대기업 CEO 및 임원 30여명이 참석했다.



지역 건설업계를 대표하여 참석한 김형겸 회장은 박형준 부산시장,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과 함께 부산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 선포식(퍼포먼스)을 진행하여 건설대기업과 부산전문건설업체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과 혁신의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건배사를 통해 "부산 전문건설 발전을 위해 부산시와 건설대기업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03

주진우 국회의원 간담회

부산시회(회장 김형겸)는 11월 17일(11:30 / 부산 전문건설회관 4층) 주진우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경기침체에 따른 전문건설업계의 어려움과 업계 주요현안 사항인 “건설산업 생산체계 정상화”, “가덕도 신공항 조기착공 및 지역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확대”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주진우 의원은 “전문건설업계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04

제4차 건설대기업 본사방문

부산시회(회장 김형겸)는 부산광역시 하도급관리팀과 함께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2025년 제4차 건설대기업 본사 방문」을 실시하여 부산 전문건설사업자의 하도급 참여 확대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건설대기업 본사 방문단에는 부산시회 왕재성 사무처장, 이수철 실장, 부산광역시 박원호 건설행정과장을 비롯한 하도급관리팀 관계관 등 총 6명이 HDC현대산업개발(주), (주)한화건설, SK에코플랜트(주), GS건설(주) 4개사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건설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건설업체들의 활로를 모색하고, 부산지역 대규모 개발사업에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실질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부산시회 관계자는 “이번 본사 방문을 통해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대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회원사의 권익 보호와 수주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05

정성국 국회의원 간담회

부산시회(회장 김형겸)는 12월 6일 (11:00 / 정성국 국회의원 사무실) 정성국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

정성국 의원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부산전문건설업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건설경기 회복과 전문건설업계의 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06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정 국회의원 간담회

부산시회(회장 김형겸)는 12월 6일 (13:30 / 연세구청 구의회 의장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정 국회의원 및 연세구의회 권종헌 의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 건설산업의 어려움과 전문건설업계 현안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07

부산시 합동 하반기 대형건설현장 하도급 실태 점검

부산시회(회장 김형겸)는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부산광역시 건설 행정과와 합동으로 「휴먼파크장전 지역주택조합 신축공사」현장 등 지역 내 4개 대형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건설부조리와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건설현장의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부당 특약 설정 및 임금체불 점검 등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마련된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업 무등록자에 대한 불법하도급,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등 건설부조리에 대한 점검도 함께 진행됐다.

아울러 부산시회는 각 현장에 보다 많은 부산전문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공종별 우수 전문건설업체 추천이 필요한 경우 협회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안내하였으며, 불법·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와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08

2025년 제2차 하도급관리팀 정기업무회의

부산시회(회장 김형겸)는 12월 30일 부산광역시 하도급관리팀과 제2차 정기 업무회의를 개최하고 회원사의 일감 확보 및 종합건설업체의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 주요 협의 내용으로는 △2026년도 지역 건설산업 발전 방안을 위한 사업계획 협의, △“가덕도 신공항” 관련 부산 전문건설업체의 참여 방안 및 시행사 방문계획 협의, △부산지역 대형건설현장 하도급 실태점검 방문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됐다.

사회공헌활동

01

부산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 지원금 전달

부산사회(회장 김형겸)는 10월 22일(14:00 / 부산광역시교육청) 김석준 교육감에게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금 2,000만원을 직접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지원금은 부산시교육청과 맺어온 교육기부 활동의 일환으로, 학습 및 생활 환경이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이며,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보다 폭넓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부산사회는 지역 교육환경 개선과 저소득층 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 메세나' 활동을 2011년부터 꾸준히 전개해 오고 있다. 앞으로도 협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역 사회에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계획이다.



02

부산광역시 장애인 이용시설 2곳 지원금 전달

부산사회(회장 김형겸)는 11월 4일 동래구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하여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부산사회는 이날 동래구장애인복지관(관장 김성용)과 백양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혜정) 등 2곳의 기관에 각각 400만원씩, 총 8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소외계층을 돕는 손길이 줄어든 상황이지만, 지역 경제를 이끌어가는 건설 경제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항상 나눔과 봉사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고자 하는 부산사회의 의지를 담은 것이다.



또한, 부산사회는 매년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지원사업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으며, 올 연말에도 부산시교육청 장학금 지원을 시작으로 동구 매축지 마을 '사랑의 연탄나눔' 등 다양한 나눔 지원활동을 전개하며 지역 사회에 온기를 더했다.

03

연제구청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사업 지원금 전달

부산사회(회장 김형겸)는 11월 11일(15:00 /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주석수 연제구청장을 만나 따뜻한 나눔의 뜻을 전하며, 연제구에서 추진 중인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사업」에 동참하여 (재)연제이웃사랑회를 통해 지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사업」은 연제구 지역의 수급자, 차상위 계층, 홀로 어르신 등 겨울철 난방취약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부산사회는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소외계층을 돕는 손길이 줄어든 상황이지만, 지역 경제를 이끌어가는 건설 경제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나눔과 봉사에 앞장섰다.



김형겸 회장은 “이번 난방비 지원을 비롯해 장학 사업과 시설 후원 등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왔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진정성 있는 봉사와 나눔을 통해 건설 경제단체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04

중구청 행복 수놓기 사업 지원금 전달

부산사회(회장 김형겸)는 11월 17일 부산광역시 중구청(청장 최진봉)을 방문하여 중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 수놓기 사업」 지원금 500만원을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했다.

「행복 수놓기 사업」은 2008년부터 중구지역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 질병 및 거동불편 노인 지원”, “저소득층 아동 책상, 의자 등 지원” 등 다양한 복지지원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부산사회 김형겸 회장은 “행복 수놓기 사업과 같은 맞춤형 복지 사업에 동참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나눔과 봉사활동에 적극 앞장서며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부산사회가 되겠다.”라고 강조했다.

05

제16회 1만세대 사랑의 김장나눔 지원금 전달

부산사회(회장 김형겸)는 12월 1일(14:00 / 송상현광장) 「제16회 1만세대 사랑의 김장나눔」 지원금 300만원을 (사회복지법인)주는사랑복지재단을 통해 전달했다.

「1만세대 사랑의 김장나눔」은 16년간 부산진구노인장애인지원센터가 주관하여 부산진구 관내 소외계층 및 저소득층에게 김장김치를 제공하는 부산 최대 규모의 김장 나눔 행사이다. 해당 사업을 통해 부산진구 노인장애인지원센터는 모금된 후원금으로 김장김치를 담가 지역 내 취약 어르신들에게 전달하였다.



06

해운대 취약계층 장애인 돕기 「후원의 밤」 행사 지원금 전달

부산사회(회장 김형겸)는 11월 17일 (사)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협회(회장 김종암)에 관내 취약계층 장애인 돕기 「후원의 밤」 행사 지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부산사회 김형겸 회장은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우리 주변의 취약계층, 특히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어들어 안타깝지만, 우리 협회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간다는 생각으로 항상 나눔과 봉사에 앞장서며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07

연말 및 새해맞이 쌀나눔 행사 지원금 전달

부산사회(회장 김형겸)는 12월 6일 정성국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하여 사단법인 청색회에서 진행하는 「연말 및 새해맞이 쌀나눔 행사」 지원금 500만원을 직접 전달했다.

부산사회 김형겸 회장은 이 자리에서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소외계층을 돕는 손길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내놓은 공약사항을 실천함과 동시에, 협회가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건설경제단체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항상 나눔과 봉사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08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 지원금 전달

부산사회(회장 김형겸)는 12월 6일 연제구새마을부녀회에서 진행하는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에 지원금 500만원을 직접 전달했다.

부산사회 김형겸 회장은 “이번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이 퍼지길 바라고,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제도개선사업

제도개선

01

고용유연성 제고 위한 제도 개선 건의

건설업 특성 외면한 경직된 고용제도...채용·근로관계 종료 제도 전면 재검토 필요

부산시회는 수주·현장 단위로 인력 수요가 급변하는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해, 채용 및 근로관계 종료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정책 건의 과제를 11월 5일 고용노동부에 제출(중앙회 경유)하였다. 부산시회는 현행 고용제도가 근로자 보호 중심으로 강화되는 과정에서, 건설업 특유의 산업 구조와 현장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정규직 중심의 채용 구조와 경직된 인력조정 절차로 인해, 건설사업자들은 공사 종료 이후에도 잉여 인력을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 경쟁력 저하와 생산성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단기·한시적 프로젝트가 반복되는 건설현장에서는 현행 고용 제도가 오히려 고용 불안을 구조적으로 확대시키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이에 부산시회는 공사·현장 단위의 기간제 및 프로젝트형 계약을 명확히 제도화하고, 직무·프로젝트 단위 계약형

채용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인력 운용의 탄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근로시간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시간 총량관리제(FWS) 도입에 대한 검토도 함께 제안했다.

근로관계 종료 제도와 관련해서는, 현행 제도가 지나치게 추상적인 기준에 의존하고 있어 현장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시회는 '경영상 필요' 등 합리적인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프로젝트 종료형 고용 종료 제도를 제도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공사 종료 시점에 맞춘 인력 재배치 및 합리적인 인사조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과정에서 최소 통지 기간과 기본 보상 기준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절차적 장치는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시회 관계자는 “근로자 보호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지만, 산업 특성과 현장 구조를 외면한 획일적인 고용 규제는 오히려 고용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건설업 현실에 맞는 채용 및 근로관계 종료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근로자의 실질적 고용 안정이 함께 달성될 수 있도록 제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02

조달청장 간담회 전문건설업 현안 건의

소형공사 참여 확대·보증금 부담 완화로 중소 전문업체 경쟁력 강화해야

부산시회는 11월 25일 조달청장 간담회를 통해, 전문건설업체의 공공공사 참여 확대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건의하였다. 부산시회는 현재 조달청 발주공사가 종합공사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직접 참여 기회가 구조적으로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서는 공사의 성격·규모·전문성을 고려해 입찰참가자격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실제 발주 현장에서는 다수의 공사가 종합공사 형태로 일괄 발주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전문건설업체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소형·전문공종 공사의 비중이 현저히 낮아,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와 기술 축적 기회가 제한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부산시회는 발주공사 중 일정 비율(예: 30% 이상)을 전문건설업체 단독 또는 공동도급이 가능한 소형·전문 공종 공사로 구분 발주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아울러 발주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전문건설업종별 참여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반영하는 절차를 의무화 해, 형식적인 제도 운영이 아닌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산시회는 계약이행보증금 및 하자담보금 제도의 과도한 부담이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경영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조달청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계약이행보증금 비율을 5% 이하로 완화하고, 공사의 특성에 따라 하자담보기간과 보증조건을 차등 적용하는 합리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부산시회는 “전문건설업체는 공공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현장에서 직접 책임지는 핵심 주체임에도, 제도적으로는 참여 기회와 경영 여건 모두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며 “소형공사 참여 확대와 보증금 부담 완화는 단순한 업계 지원이 아니라, 공공공사의 품질 제고와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03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논란 재점화

“중복 규제·과도한 처벌…
현장 현실 외면한 입법 중단해야”

부산시회는 현재 다시 추진되고 있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제정 방식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부산시회는 건설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제정(안) 역시 처벌 중심 구조, 중복 규제, 업계 현실 미반영 등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실질적인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우리시회는 12월23일 성급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추진을 중단할 것과 개선 의견을 전달(중앙회 경유)했다.

부산시회는 본 제정(안)이 안전사고 발생 이후의 책임 추궁과 제재 강화에만 초점을 맞춘 사후적·처벌 중심 입법이라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안전문화는 법률 제정만으로 정착될 수 없으며, 현장 여건을 반영한 예방 중심의 도 개선과 교육·지원이 병행되지 않는 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다수의 안전 관련 법령이 시행 중인 상황에서, 별도의 건설안전특별법을 추가로 제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 규제이자 이중 처벌 구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 법령 체계 내에서도 충분히 안전관리 강화가 가능한 만큼, 새로운 특별법 제정보다는 현행 법령의 개정·보완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부산시회는 건설종사자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삭제한 점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건설현장의 다수 안전사고는 작업자의 안전수칙 미준수와 부주의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건설종사자에 대한 책임 규정을 전면 삭제하는 것은 안전의식 저하와 현장 규정 형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주와 법인뿐만 아니라, 건설종사자 역시 안전 관리의 주체로서 일정 수준의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025년 4/4분기 신기술 현황

지정번호	개발업체	신기술명	주요 내용
1034 (2025.11.17.)	진형건설(주) 청호이앤씨(주)	인화물 호이스트가 구비된 타워마스트 지지 기반 슬립폼 방식 지하수직구 벽체 시공 공법 (TL-SLIPFORM)	타워마스트와 전단키를 이용해 슬립폼을 슬라이딩 상승시켜 벽체를 형성하며 요크와 로드를 배제하여 철근 간섭현상을 해결하고 타워마스트 내부에는 인화물 호이스트가 설치된대심도 지하수직구 수직 벽체 시공 공법
1035 (2025.11.21.)	(주)스마트제어계측	무선통신 기반의 고성능 카메라로 구성된 로봇을 활용한 교량케이블 외관조사 기술	일방향으로 결합된 3개 축 이동부와 고성능 카메라 및 와이파이 무선통신 방식의교량 케이블 이동 로봇을 이용하여 120~300mm 관경 범위의 교량 케이블 외주면을 따라 케이블의 외관 상태 영상과 위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획득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케이블 표면의 균열, 파손, 오염과 같은 손상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교량 케이블 외관조사 기술
1036 (2025.12.09.)	디엘이앤씨(주) 강남제비스코(주) 디엘이앤씨(주)	코어셀 구조 기반 아크릴에멀전계 기능성 도료를 활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탄산화 내구성 향상 공법(DURA-SHIELD System)	콘크리트 구조물 표면에 보호층을 형성하는 공법으로 -20~-10℃ 범위의 유리전이온도 특성 확보를 통해 내구성 보호용 도막의 가교력을 향상시키고, 고탄성과 복원력에 의한균열 거동 대응성을 확보하였으며, 고흡분 용적비를 55~60% 범위로 증대시켜 소지 전이력 개선에 따른 차폐 효과로 방수성을 부여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의 장기 내구수명을 향상하는 공법
1037 (2025.12.12.)	디엘이앤씨(주) 롯데건설(주) 케이에이치건설(주) (주)포스코이앤씨	지반개량체와 내부보강재를 이용한 부력방지공법(BRP 공법)	원지반에 토양고화재와 물을 주입하여 교반한 지반개량체에 상부 구조물과 지반개량체를 연결하는 수단으로 강관과 강관의 상단에 구성되어 슬래브 또는 기초 콘크리트에 매립되는지압 플레이트 및 지반개량체 내부에 매립되는 부차 플레이트로 구성된 내부보강재를 근입하여인발 저항성을 확보한 인발저항개량체인 부력저항파일을 형성하여 구조물에 작용하는 부력을 파일과 지반의 마찰력으로 저항하는 부력방지기술
1038 (2025.12.19.)	(주)대한이앤씨	실화상 및 적외선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무차단 교면 포장 상태 정보 수집 및 분석 기술	실화상 및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와 위치정보 수집 RTK센서, 수집된 데이터를 통합처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검사용 차량을 이용하여 교통 통제없이 50~80km/hr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교면 포장과 경계면을 촬영한 영상 데이터와 좌표 정보를 통합, 정렬, 평가 및 시각화하여 교면 포장의 열화, 수분 손상, 교량 바닥판 상태를 분석하는 기술
1039 (2025.06.11.)	(주)국지건설 (주)헤즈온 (주)인테크이앤씨	CSM고무를 활용한 도막재와 섬유보강재를 장비로 동시 시공하는 교면방수공법(WBR System)	아스팔트를 클로로술폰화 폴리에틸렌 고무(CSM 고무)로 특수 개질하는 제조기술을 적용한 도막재 상부에 동일 도막재를 함침하여 제조한 섬유보강재를 포설하는 교면방수공법으로, CSM 고무를 통해 방수층의 내구성을 향상시켰으며, 도막과 시트 간 일체성 향상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장치가 설치된 시공장비를 활용해 환경안정성을 향상한 공법

※ 출처 :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www.kcnet.or.kr) → 신기술현황 → 지정현황(건설신기술)

전문건설인 비전과 도전



섬진건설(주) 대표이사 **박종열**

세상은 결과로 판단한다. 그러나 진정한 가치는 도전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만들어 낸 '지속의 흔적'에 있다. 그 흔적이 켜켜이 쌓일 때 사람들은 불굴의 노력에 존경을 가득 품은 박수를 보낸다. 섬진건설(주) 박종열(63) 대표는 그 귀감이 될 만한 전문건설인이다.

겉으로 보기엔 온화하다. 하지만 그 표정에 속아선 안 된다. 거친 세파를 오뎀이 정신으로 힘차게 딛고 일어난 백전노장이니까 말이다.

섬진건설이라는 이름은 그의 고향 광양과 맞은편 하동을 나란히 끼고 바다로 내려가는 저 유명한 섬진강에서 따왔다. 송림과 햇빛에 반짝이는 은빛 백사장, 그리고 재첩과 고기를 잡던 그때 그 시절의 아련한 추억이 깃들어 있다.

박 대표는 너무나 힘들었던 가정 사정 때문에 일찌감치 직업전선에 나서야 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3남 5녀(그는 차남이었다)가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 정도로 가난에 찌들어있죠. 공고를 졸업한 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 굴삭기 기사 조수로 취업했습니다.”



부산에 와서 누나 집에 기거하며 현장 '노가다'를 시작했다. 하루 10시간을 일해야 하는 강행군이었지만 이를 악물고 견뎠다. 온갖 심부름을 해야 했고, 조금이라도 눈에 차지 않으면 얻어맞기 일쑤였다. 그래도 묵묵히 새벽에 별을 보며 나가 굴삭기를 닦았고, 작업이 끝나면 다음날 준비를 꼼꼼히 마친 후 달을 보며 귀가했다. “밤에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1년 만에 기사 자격증을 땀습니다.” 그의 성실성을 눈여겨봤던 차주가 3년 후 정식 기사로 승진시켜 본격적으로 돈을 모아갔다. “사업 자금을 저축하라, 동생들 학비까지 대느라 허리가 휠 정도로 일했습니다. 가진 게 몸 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대망의 1995년, 토목공사 면허 취득과 함께 섬진건설을 설립해 부푼 꿈을 키워갔다. 그러나 박 대표가 힘차게 달려갔던 탄탄대로는 외환위기가 찬물을 끼얹으면서 풍비박산이 나버렸다. 박 대표는 그 당시의 공포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제 기억으로 95년에 전문건설 면허를 낸 부산 업체가 50여 개였는데 지금까지 살아남은 게 20%도 안 됩니다. 도미노식으로 무너지는데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도 가진 재산을 몽땅 날려버렸다. 한 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도 처리된 건설업체의 부산 구서동 미완공 건물 토목공사를 박 대표에게 맡겼고 그는 말끔히 마무리했다. 이후 공사비 21억 원을 요구했더니 이게 웬일인가. 근거 서류가 없으니 줄 수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더라는 거다. 아차 싶었다. “회사 담당 직원과 수십 차례 만나며 친분을 쌓았던 터라 계약서류를 만들지 않고 덜컥 거래했던 게 문제였던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박 대표는 소송에 명운을 걸었다. 하지만 공사 증거자료가 없기에 불리한 상황에 몰릴 수밖에 없었다. 1차에 이어 2차 소송도 패소했다. 이제 남은 건 대법원밖에 없는 상황. 주위에서 어차피 질 거라며 말렸다. 너무 억울해 서울에 올라가 대법관 출신 변호사까지 만나봤지만 같은 말만 들어야 했다.

하늘이 노렸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란 비관적인 생각에 좌절했다. 탈출구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부인이 나섰다. “먹여 살려야 할 가족이 있지 않느냐며 제 소매를 붙잡고 다독이더라고요. 정신이 번쩍 듭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어느 정도 기운을 차린 그는 보름 동안 설악산 여행을 다녀왔다.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며 쓰라린 심정을 달랬다. 자신을 질책하기만 했던 마음에서 벗어나 과거를 되짚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그래, 다시 시작하는 거다. 그리고 소송을 잘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지.”

박 대표는 대법원에 항고했다. 소송 패소의 이유를 다시 철저히 따져 보면서 공사 당시 썼던 카드 영수증과 공사 메모, 일기 등을 일일이 챙기며 자료를 보완했다.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다. 6년간의 기나긴 소송 끝에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이라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승소 결정이 나왔다. “하늘을 날아가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알겠더군요.” 그간의 피 말리던 시절, 밤낮없이 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뛰어다녔던 역경과 인내의 시절이 그의 뇌리를 스쳐지나갔다.

박 대표는 소송을 통해 받아낸 21억 원을 마중물 삼아 섬진건설을 부산에서 팔목할만한 중견 전문건설업체로 키워낼 수 있었다. 2023년 기준으로 매출액 1200억 원으로 철근콘크리트 부문 도급순위가 부산에서는 10위 이내, 전국으로는 60위권에 들었다.

섬진건설의 사훈은 적극적 사고, 정확한 판단, 과감한 실천이다. 다시 말해 현장에서는 직원이 스스로 대표가 되어 일을 처리하라는 거다. 직원들을 배려하고 자율성을 부여한 박 대표는 설사 일이 빠격대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했다. 단 그는 반드시 현장에 자주 나가 사후 점검하고 안전문제를 철저히 따진다. 이러니 업무 효율이 올라가고 현장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저명한 브라질 소설가 파울로 코엘료가 말했다. “인생에는 두 가지 실수가 있다. 첫째는 시작하지 않는 것, 둘째는 끝내지 않는 것이다.” 박 대표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과감하게 일을 시작했고, 일의 마무리를 철저히 해냈다. 그 과정에서 맞게 된 난관을 불굴의 오탁이 정신으로 돌파했다. 그를 보노라니 헤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에서 노인이 외친 명언이 떠오른다. ‘비록 쓰러질지언정 패배하지 않는다.’

글 박종열

01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안내개정 안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에 따라, 2개 이상의 전문업종이 포함된 유지보수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가 발주될 경우 각 전문업종별로 적격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기에 회사에서는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업무 처리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정 주요 내용

- 기존에는 복수 전문업종이 필요한 유지보수공사에 대해 주된 공종만 평가하거나 종합공사로 발주했으나, 개정 후 각 전문업종별 시공능력 등을 평가하여 우수한 업체가 선정
-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 세부 평가는 입찰공고에 명시된 전문업종별 금액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며,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 후 합산
-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기준 신설로 전문건설업체의 유지보수공사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발주방식도 다양화

2. 시행일 : 2025.11.17.(월)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2 | 「조경식재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안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원·수급사업자 간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보급하는 「조경식재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25.11.21) 개정하여 발령·시행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경식재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주요내용

- 유지관리 의무 위반(기성부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부여(제28조)
-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 규정 반영(제48조)
-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요건 추가(제35조)
-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 조항 규정(제19~21조)
- 대금 미지급시 원사업자 소유 물건에 유치권 행사 가능(제38조)
-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회피 등과 관련한 분쟁 시 원사업자의 증명책임 규정(제58조)

2. 발령/시행일 : 2025.11.21.(금)

※ 개정된 조경식재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에서 다운받아 활용 가능하다.

03 | 국가계약법 및 조달청 적격심사 낙찰률 상향 조정 안내

중·소 건설업체의 안전투자 여건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낙찰하한율이 2%p 상향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규모별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개선 현황

공사규모별(추정가격)	낙찰하한율(%)	
	현행	개정
100억원미만 ~ 50억원이상	85.495	87.495
50억원미만 ~ 10억원이상	86.745	88.745
10억원미만 ~ 3억원이상	87.745	89.745
3억원미만	87.745	89.745

2. 국가계약법·조달청 시행일 : 2026.1.30.(금)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4 | 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연장 안내

「지방계약법 시행령」상 입찰·보증금 인하, 검사·대가지급기간 단축 등 한시적 특례의 적용기간이 당초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정 주요 내용

- 수의계약 절차 완화
(기존) 1회 유찰 시 재공고 후 수의계약 가능
(변경) 1회 유찰 시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 가능
- 보증금 인하
(입찰보증금) 5% → 2.5%
(계약보증금) 10% → 5%
(계약이행보증금) 40% → 20%

2. 적용기간 : 2026. 1. 1. ~ 2026. 6. 30.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1 | 조경석 취급 시 자연발생석면 확인 및 취급 금지 등 안전관리

자연발생석면을 함유한 조경석과 암석, 토양은 미관상 활용도가 높으나, 석면 가루가 비산되어 인체에 흡입될 경우 악성종피종, 폐암, 석면 폐증 등 심각한 질환을 유발한다. 정부는 2011년부터 석면 등의 사용금지 제도를 시행 중이며, 이에 따라 회원사는 건설공사 시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

1. 석면 조사 및 확인 의무

- 조경석 시공 및 납품 시 석면 함유 가능 지역의 암석은 전문가 또는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석면 조사 실시
- 암석(돌) 및 토양 등의 재료 종류와 원산지, 공사 현장에 대해 환경부 환경공간정보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자연발생석면 함유 가능성 사전 확인
- 조사는 육안 감별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전수조사와 분석 병행

2. 재료 반입 및 착수 시 확인 지침

- 암석(돌) 표면에 흰색 또는 회백색의 실처럼 가늘고 뽀족한 섬유 다발 형태가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
- 머리카락이나 솜털처럼 원래 색상과 확연히 다른 색의 섬유질이 다수 발견될 경우 비산 가능한 석면으로 간주하고 엄격히 관리

3. 석면 검출 시 금지 및 조치 사항

- 석면이 검출된 조경석은 「석면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취급 절대 금지
- 공사 중 또는 후에 석면이 검출될 경우 관련 법령 절차에 따라 즉시 현장 조치 및 취급 중단
- 석면 조사 결과에 따라 폐기나 반품 등 법령에 따른 적정 조치 즉시 이행
- 시공 중이나 사용된 재료에서 석면이 검출되면 준공 및 하자책임기간 후에도 법적 책임(불법행위) 대상으로 발주처 요구가 없더라도 반드시 법령에 따른 조치 필요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2 |

건설현장 다국어 안전보건표지 게시 안내

국토교통부에서는 국내 건설현장에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언어장벽으로 인해 안전수칙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자, '다국어 안전보건 표지 10종'을 제작했다. 이에 따라 각 회원사는 내·외국인 노동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해당 표지를 게시하는 등 안전관리 업무에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1. **외국어 종류** : 네팔, 몽골, 미국 등 10개 국어

2. **게시 장소** : 건설현장 사무실, 안전교육장, 휴게실, 식당, 출입구 등

3. **내려받기 주소** : [다국어 안전보건 표지 내려받기 주소](#)

- ① 안전문화실천추진단(kosha.or.kr/safety1team) → 자료실 → 현장캠페인용 콘텐츠
- ②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 → 안전보건자료실 → 외국인자료 → 기타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3 |

「지붕공사 추락사고 감축 방안」 안내

고용노동부가 정부의 안전보건 정책 강화 기조에 맞춰 지붕공사 추락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지붕공사 추락사고 감축 방안'(25. 10. 24.)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회원사는 추락 위험이 높은 지붕 공사 시 해당 방안을 업무에 적극 참고·활용해야 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지붕공사를 포함한 소규모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대대적인 불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인 만큼, 각 회원사는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1. **지붕공사 추락사고 감축 방안 주요 내용**

- 지붕공사 현장 발굴 및 안전보건 체계 구축 추진
 - 지붕공사 관련 기술지원,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등
- 지붕공사 관계자 안전관리 역량 강화
 - 지붕공사 교육지원, 지붕공사 재정지원 사업, 지도감독 강화 등
- 지붕공사 안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지붕공사 전문면허 등록업체 한정으로 시공자격 강화
 -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등 지붕공사 안전관련 규정 개정 등
 - 지붕공사 특화 기술 개발 보급(전용 추락방지장치 개발, 안전인증 등)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4 |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내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는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44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회원사는 소속 조종사들이 조기에 교육을 신청하고 이수할 수 있도록 이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철저한 교육 관리를 통해 건설현장 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5 |

토사붕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안내

집중호우 여파로 토사 붕괴 등 현장 사고 위험이 커지자, 국토교통부에서 건설 현장의 안전 수칙 준수와 예방 조치를 당부했다. 회원사에서 는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에 힘써야 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요 안전수칙

- 호우에 의한 토사유실 또는 흙막이 지보공 이상(변형, 파손 등) 여부 확인
- 지반 내 우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비닐 보양
- 굴착면 기울기 및 지하수위 등 계측 실시 및 이상 여부 확인
- 붕괴·낙하가 우려 구간 방호시설 또는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 굴착작업 시 지반 종류에 따라 굴착면의 적정 기울기 확보
- 굴착면의 상부에 하중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는 성토 및 자재 적치 등 금지
- 굴착면 기울기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

2. 회원사 협조사항

- 안전관리 수칙과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현장 안전관리 현황을 철저히 점검
- 발주자 및 감리자와 긴밀히 협력하여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현장 안전교육 시행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6 | '25년 건축공사장 시공·안전 및 품질업무 관련 반복 지적사항 안내

부산광역시가 2025년 중·소규모 건축공사장을 합동 점검한 결과, 매년 반복되는 지적 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주요 시정사항을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해당 내용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1. 반복 지적사항

- 현장대리인·품질관리자 현장배치 미확인 및 시정지시 미흡
 - 건축공사 연면적 660㎡ 이상인 경우 품질관리자 1인 배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
 - 현장대리인 미배치 또는 현장이탈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
- 품질관리 관련 반복 지적사항
 - 품질시험실 미설치, 품질관리자 현장 미배치, 레미콘 송장 관리 미흡, 콘크리트 타설대장 미작성, 레미콘 공급원의 사전점검 미실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시험성적서 미제출(7일 이내 제출), 현장공시체 제작 및 관리 미흡 등 품질업무 관리 소홀
- 계단(경사슬래브) 하부 동바리 설치상태 불량
 - 동바리 경사설치 및 경사빼기 미설치 사례 발생 주의
- 균열관리대장 미작성 및 보수계획 미수립 금지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견서 조건부적정·부적정 또는 미의뢰 건은 해당 공정 착공 전 반드시 승인(적정) 후 시공할 것

2. 회원사 협조사항

- 회원사는 위 사항을 숙지하여 각 현장에 적극 전파하고, 향후 점검 시 동일한 지적 사항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필요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7 |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활동 참여형 인센티브 비용 산안비 사용가능 사례 안내

고용노동부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2025-11호, '25.2.12.)」에 따라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활동 참여 인센티브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체 앱(App)을 개발하고 포인트나 상품권 등 현금성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경우, 정해진 기준에 맞춰 이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보건교육비 등)로 사용할 수 있다.

1. 우수사례 : 현대건설 「H-안전지갑」 운영 사례

- 근로자가 TBM, 무사고 인증, 안전신고·제안 등 안전활동에 참여하면 App을 통해 현금성 포인트(네이버 포인트, 문화상품권 등) 지급
- 월 최대 39,200포인트, 분기별 우수자 100,000포인트 지급

2. 적용 기준 및 유의사항

- 인센티브 지급비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 제5호(안전보건교육비 등)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5%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 App 개발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불가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8 |

지붕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안내

지붕 공사 중 노후 지붕 보수나 패널 교체와 같은 고소 작업 시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근로자 추락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토교통부가 '주요 안전 수칙'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회원사는 지붕 공사 시 추락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주요 안전 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주요 안전수칙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요 안전수칙 내용

- 지붕 작업 시 고소작업대 사용 또는 안전발판을 설치한 후에 작업 진행
- 지붕의 가장자리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할 것
- 모든 작업자는 안전모·안전화·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관리감독자는 보호구 착용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것
- 지붕 위 작업 장소 및 통로에는 폭 30cm 이상의 작업 발판등 안전장비를 설치하여 이동할 것
- 비계 및 가설 구조물의 안전상태를 수시로 점검 및 보강할 것
- 작업 전·중·후 안전교육과 위험요인 사전제거를 철저히 할 것
- 위험 작업 발견 시 즉시 중지하고 개선조치를 이행할 것
- 태풍·강풍·폭우 등 악천후 예보 시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충분한 안전 조치를 시행할 것
- 작업자에 대한 건강상태 및 고소작업 적합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것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9 |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 및 내진보강에 따른 각종 혜택 안내

부산시에서는 내진 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을 지진 안전 시설물로 인증해주는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증에 따른 지방세 감면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원사는 관련 업무 진행 시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활용해야 한다.

1. 주요 내진보강 인센티브 : 건축물 내진 보강 시 혜택

- 지방세 감면(취득세·재산세)
- 국세 공제(기부 시)
-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할인
- 용적률 완화(국토부)
 - 보유 시설물 내진보강 시 다양한 세금 혜택과 지자체 보조금 매칭 사업도 운영 중(90% 지원)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10 | 건설사고(관로매설, 굴착공사 등)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안내

최근 건설현장에서 관로 매설, 굴착공사 등 관련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굴착공사 주요사고사례’를 발표했으니 회원사에서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 안전교육과 안전 시설물 설치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굴착공사 시 지반 상태 점검, 흙막이·지보공 등 지지 시설 설치, 작업 전 안전점검 강화 등 실질적인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하고 사고사례를 현장 근로자와 협력 업체에 공유하여 안전관리 강화에 유의해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11 | 동절기 대비 건설공사 안전점검표 및 자율 예방활동 강화 안내

동절기를 맞아 기온 저하에 따른 콘크리트 동해, 지반 동결·융해로 인한 붕괴, 화재 및 질식 등 안전사고 위험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동절기 대비 건설공사 안전점검표」를 활용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자율적인 예방 활동과 자체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따라서 회원사는 안내된 안전점검표를 적극 활용하여 동절기 건설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점검 주요 내용

- 동절기 대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점검 주기적 실시
- 폭설 및 한파 시 취약 시설물(가설구조물, 낙하물 방지망 등)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
- 콘크리트 보온 양생 시 관련 지침 준수
- 화재 위험 작업 시 화기관리 책임자 지정 및 화재 감시자 배치 등을 통해 화재 예방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12 | 고층건축물 건설현장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안내

홍콩 고층 아파트 화재(25. 11. 26. 발생)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화재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설현장 주요 안전수칙’을 발표했다. 이에 회원사는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과 시설물 설치에 힘쓰는 것은 물론, 안내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

1. 주요 안전 수칙

- 작업장 주위 가연성 물질제거, 용접방화포 등 방호조치 실시
- 작업근로자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여부 확인, 작업장 주위 소화기 비치 및 소화시설 기능 확인
- 화기작업 중 용접불티, 불꽃 등 비산방지조치
-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스 환기 조치(밀폐공간 강제환기)
- 작업 전·중으로 가스농도의 측정, 용접·용단작업 중 화재 감시자 배치 및 방연장비 지급
- 추락방호망 설치 시, 한국산업표준(KS)에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추락방호망 사용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13 |

2026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 안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2026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을 공고함에 따라, 관련 응시 일정 등 상세 내용을 우리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하였으니 자격 취득 계획이 있는 회원사 임직원께서는 해당 자료를 살펴보기 바란다. 아울러 원서 접수 및 세부 사항은 큐넷(www.q-net.or.kr)에서 개별 확인이 가능하며, 기타 문의는 HRD 고객센터(1644-8000)를 참고하기를 바란다.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14 |

부당한 하자보증 요구 관련 안내

최근 공사 성격상 하자보수가 필요 없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원도급업체가 하자보증서 제출을 요구하는 부당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우리 협회는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있음을 확인하고, 100대 종합건설사업자와 대한건설협회에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한다.

1. 하자담보책임 관련 법령 요지

-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되지 않는 공사
 - * 다음 공종은 공사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공사로서, 하자담보책임 대상에서 제외
 - 구조물 해체·철거공사
 - 가시설공사, 가설도로, 가설건축물 등 1회성 공종
 - 단순 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 채취공사
- 회원사 유의 및 대응 사항
 - 해체·가시설·토석운반 등 1회성 공종에 대해 원도급업체가 하자보증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상 부당 특약에 해당할 수 있음
 - 계약서, 특약, 공문, 이메일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

2. 기타사항

- 부당한 하자 보증서 요구가 시정되지 않는 경우 우리사회 건설정책부(☎051-633-0260)로 신고·상담하시고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 대응 지원을 요청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15 |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노무비 직접 지급 규정 안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노무비를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노무비 직접 지급 의무 :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함. 이는 인력소개소 등 다른 알선을 통해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계좌 지급 원칙 : 임금은 원칙적으로 건설근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해야 함.
- 대리인 계좌 지급 금지 : 시공팀장, 반장, 인력소개소 등 대리인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다만, 근로자가 일반 계좌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 후 해당 업체 명의 계좌로 지급할 수는 있음.
- 위반 시 제재 :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국토교통부에서 2026년 1월부터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근로자 임금의 직접 지급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기에 회원사에서는 임금 지급 절차 전반을 재점검하여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고, 대리인 명의 계좌 지급 등 위법 소지가 있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란다.

16 |

겨울철 건설현장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안내

겨울철 기온 하강으로 양생 작업 시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이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콘크리트 양생장소를 '밀폐공간'으로 정의하고 있으니, 회원사는 관련 사고사례와 안전수칙을 참고하여 유사 사고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한다. 또한, 현장 안전을 위해 갈탄 대신 전기열풍기 사용을 권장하며, 불가피하게 연료를 사용할 경우 *3대 안전수칙을 포함한 예방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한다.

- * 3대 안전수칙 : ①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② 충분한 환기
③ 호흡 보호구 착용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17 |

2026년 설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운영 안내

공정거래위원회는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설 명절을 앞두고,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신속히 처리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하도급 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사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1. 운영기간 : 2025. 12. 26. ~ 2026. 2. 13.

2.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T : 051-460-1041~8, F : 051-460-1004)

3.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주요 사례

-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
-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연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 하도급 대금을 장기(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초과)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또는 어음대체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거나, 어음 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함께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하도급 업체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초과)하는 행위
-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결제 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원가절감 목표액을 설정하여 이를 하도급 업체에 할당하여 감액하는 행위 등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18 |

2026년 건설업 노무 관련 달라지는 제도 및 요율표 안내

부산시회는 2026년도 달라지는 건설업 노무 관련 제도 및 요율표에 대해 회원사에 안내했다.

-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26. 3. 10)
 - 사용자 범위 확대 :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원청까지 사용자로 규정
 - 노조 요건 완화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종사자 단결권 보장
 - 노동쟁의 범위 확대 : 경영상 결정 및 명백한 단협 위반을 쟁의 사유에 포함
 - 손해배상 청구 제한 : 정당한 노조활동 손해 청구 금지 및 조합원별 책임 산정
- 「근로기준법」 개정안(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 시행('25. 10. 23)
 - 상습체불 기준 마련 : 3개월분 이상, 5회 이상, 체불 총액 3천만 원 이상 등
 - 경제적제재 확대 : 신용정보제공 및 국가·지방계약입찰 시감점 부여
 - 명단공개 사업주 제재 :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및 출국금지 가능

-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시행('26. 5. 12)
 - 도급사업에서 임금체불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직상수급인 및 상위수급인에게 대지급금 회수 근거 마련
- 2026년 최저임금 시간당 10,320원 적용
 - ('25년) 10,030원 → ('26년) 10,320원 (월 환산액 2,156,880원)
- 건설업 월평균보수액 인하('25년) 4,806,267원 → ('26년) 4,798,427원
- 사회보험요율 및 부담금 인상
 - 건강보험요율 : ('25년) 보수월액의 7.09% → ('26년) 보수월액의 7.19%
 - 국민연금요율 : ('25년) 표준월소득액의 9.0% → ('26년) 표준월소득액의 9.5%
 - 장애인 고용부담 기초액 : ('25년) 1,258천원 → ('26년) 1,295천원
 -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 ('25년) 0.06% → ('26년) 0.09%
- 근로자의 날(5. 1)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함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19 |

2026년 적용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 개정 안내

국토교통부에서 2026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를 다음과 같이 확정·공고하였다.

1. 2026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 현황

계	공통	토목	건축	기계설비	유지관리
349	254	28	30	24	13

* 전체 1,459개 항목

2. 2026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항목

계	토목	건축	기계설비
1,850	1,016	357	477

3. 적용시기 : 2026. 1. 1일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20 | 2025년도 건설(전문)공사 실적신고 및 2026년도 시공능력평가 안내

부산사회는 2025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접수를 2026. 2. 19(목)까지 방문 및 인터넷 접수하며,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결산 재무제표 증명원의 경우 2026. 4. 15까지(개인의 경우 2026. 6. 1.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접수 바랍니다.

※ 2025년 실적신고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 신고업체의 건설공사 실적, 재무상태, 기술능력, 대외 신인도 등을 기준으로 함.

01 2025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실적신고 대상업체

- 신고일 현재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로서 시공능력 평가·공시를 희망하는 업체

접수기한

- 공사실적 관계서류(1차) : **2026. 2.19(목)까지**
- 재무제표 관계서류(2차) : **2026. 4.15(수)까지** (개인 2026. 6. 1까지)
- ※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2026. 6.24까지** 제출
- ☞ 상기 기한 이후 실적신고 접수 일체 불가

접수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제출서류

- 통합실적관리시스템에서 작성된 서류를 출력하여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유의사항

- 실적신고는 통합실적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작성·제출
 - ※ **통합실적관리시스템 접속하기** : <https://www.icms.or.kr/>
 - 수기 또는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한 서류작성 및 신고는 인정되지 않음
- **실적, 경영상태, 시공능력 등의 확정 시점 이후 정정불가**
 - 실적사항 등의 확정과 동시에 해당 자료가 국토부, 국세청, 조달청 등 정부부처로 송부되어 공적 자료로 활용되므로 그 정정은 불가함
- **2022년 1월 1일부터** 발주되는 건설공사는 **공사유형을 신설 및 유지 보수공사로 구분***하여 신고 (이전 발주공사는 유형 구분 없이 신고)

- 2025년도 **공사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시공능력평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반드시 기한 내 신고(무실적 신고)**하여야만 평가를 받을 수 있음
 - ※ **공사실적이 없어도 기술인(기술능력평가액)과 자본금(경영평가액)으로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가능**
- 여러 건으로 계약·시공한 공사를 1건 공사로 신고하거나, 단일 업종으로 계약·시공한 공사의 부대공종을 여러 건으로 나누어 신고하는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2025년 실적신고는 **2025.12.31일 현재 신고업체의 건설공사실적, 재무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기준으로 함**
 - 실적신고는 2025. 1. 1 ~ 12.31일까지의 건설공사실적을 신고하는 것임 (2025년 신규등록업체는 등록일로부터 2025.12.31일까지의 실적을 신고)
 - 기술인은 건설업등록기준에서 인정하는 건설기술인으로 2025.12.31일 기준 회사에 상시근무하는 자에 한하여 인정 (2025.12.30일 퇴사자, 일용직 건설근로자는 인정되지 않음)
 - 신고금액은 천원단위(천원미만 절사), 부가세(VAT) 포함 금액 입력(기재) 단, 재무제표는 원단위로 입력
- 건설업 이외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 물품구매 및 납품, 장비임대·조사, 타워크레인, CCTV촬영·설치, 용역(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은 제외
 - ※ 다만, 물품납품·용역으로 계약했으나 해당 **건설업 등록과 시공(현장설치)**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제한하고 **건설공사실적증명서** 발급시 실적 인정
- 유사건설공사(물품·납품·용역)의 경우 시공능력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KISCON에 **건설공사대장 통보**해야 함
-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포함),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반드시 세무대리인의 확인(간인)을 받은 원본 제출
 - **손익계산서상 건설매출액, 공사수입금 항목이 나타나야 함**
 - 실적신고 금액이 재무제표상 매출액보다 10%(부가세)이상 초과한 업체는 소명서, 기타 건설업 매출이 있는 경우는 증빙서류를 제출
- 건설기술인은 해당업종 등록기준에서 인정하는 기술자만 인정, 건설기술인 1인이 여러 종류의 기술분야 또는 국가기술자격과 학·경력 기술자격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 등록기준에 의하여 인정받고자 하는 1개 기술자격만을 선택하여 보유업종에 적용함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경력 신고하여 학·경력자 자격등급을 취득한 건설기술인은 기술인협회 자료로 평가하므로 자격증 사본 등 증빙서류 제출 제외 가능**

- 신고서류 중 누락 또는 불명확한 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보완하여야 하며 불응시 보완·제출 전까지 시공능력평가 불가(건경 16070-862, 2003.9.1)
- 신고서류는 원본으로 제출, 사본제출 가능 서류는 필히 원본대조 필 날인[(하)도급계약서, 자격증(경력증), 신기술지정, 우수건설사업자지정 등]
- 기성실적 관계 증명서류 제출 시, 실적 증명(첨부)서류의 확인이 용이하도록 증명(첨부)서류 하단[도급계약서, (재)하도급계약서는 하단,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비교란]에 각 공사건별 기성실적신고서(내역표, 서식5-1)의 일련번호를 표기
- 공공공사 관급자재액과 관련하여 수급인이 해당 발주자가 구입한 자재를 공급받아 설치 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6-1) 확인을 받고 제출한 경우 해당공사에 대한 공사실적평가액 설치금액의 50% 가산
- 직접시공 실적을 공시 보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 직접시공분 기성실적증명(신청)서(6-2 및 6-3)을 발주자 등에게 확인 받고 제출하여야 인정 및 공시 가능
-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됨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수주한 경우* 전문업종 및 주력분야 시공능력평가 시 해당 실적을 반영하며 전문공사 실적과 별도 구분 관리
-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공사로서 아래 날짜 이후의 공사
 - 공공공사 : 2021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된 공사
 - 민간공사 : 2022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된 공사
 (입찰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도급계약 체결')

※ 종합공사를 전문공사로, 전문공사를 종합공사로 신고하지 않도록 유의

※ 종합건설사업자 자격으로 종합공사를 수주한 경우 대한건설협회로 신고

- 전문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조건으로 다른 건설사업자(부계약자)와 공동도급 받은 경우, 실제수행한 부분과 부계약자 공사실적의 1/2 실적 인정(건설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0항제4의2호)
-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으로 전문건설업종 대업종화 및 주력분야 평가 공시제 도입·시행('22. 1. 1)**
 -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으로 전문건설업종을 대업종화*(28개 → 14개)하고 이에 따른 주력분야를 관리토록 함에 따라 업종 및 주력분야 단위 시공능력평가 산정·공시
 - *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22. 1. 1)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는 해당 업종의 모든 업무분야의 공사를 수행할 수 있으나, 민간 발주 공사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주되는 공사부터 가능('22. 12. 31. 이전 발주된 민간공사는 주력분야를 등록한 업무분야 공사만 수행 가능). 다만,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주력분야의 공사만 수행할 수 있으며, 주력분야가 아닌 다른 업무분야의 공사는 수행할 수 없음

- 업종 실적과 주력분야 실적이 별도 구분 관리됨에 따라 개별 신고 공사건별 업종과 주력분야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신고해야 함 (※ 누락 내지 오기 확인 등)

- 2023년, 2024년 공사실적 전체 또는 일부를 누락한 경우 2025년 실적신고 시 함께 제출(각 연도별 신고)할 수 있음
- 2025년에 실제 준공 처리되고 기성실적증명(신청)서도 발행되었으나, 세금계산서는 2026년에 발행된 경우라도 2025년 공사실적으로 인정
- 준공 정산 등에 의하여 기 확정된 공사실적 건 중 사후 감액정산 사항이 발생한 경우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 연도를 기준으로 해당연도 실적신고 시 함께 신고
 -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연도 실적으로 음수(-) 기성액 신고
 - ※ '23년, '24년 발행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의 경우 누락분으로 신고
- 영문 버전의 실적관리 내지 증명서 발급 등이 필요한 업체는 통합실적관리시스템에서 '영문 버전 추가 신고'를 완료하고, 영문 실적 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 ※ [유의사항] 실적 처리 및 시공능력평가의 기준은 국문서식에 의하여 처리됨에 유의
 - ※ [유의사항]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공사인 경우에도 영문 관리가 필요한 경우 영문 추가 신고 필요
 - ※ [유의사항] **영문 추가 신고는 필수(의무)사항이 아님**
- * **해당 업체의 선택에 의하여 실적 관련 데이터를 영문으로 별도 추가 관리 신청하는 것에 해당**

실적신고 서류 거짓 제출 시 제재사항

-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때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시공능력평가 시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가중평균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라목(8))
- 건설공사 실적, 기술인보유현황, 재무상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 부과(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 제2호)
- 건설공사 실적, 기술인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영업정지 6월 또는 1억 이하 과징금 부과(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제3호)
-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불법·불공정 행위의 건설공사실적 인정 범위

· 허위실적신고

- 시공능력공시를 위하여 건설공사실적, 기술인보유현황, 재무상태를 거짓으로 신고한 자(법 제82조제1항제3호, 법 제97조제2호)

☞ (공사실적 인정 범위) 불인정

- ※ 수사기관 고발, 영업정지 6월, 부정당업자 제재, 시공능력 삭감

· 전문간하도급

-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 할 수 없음(법 제29조제2항, 법 제82조제2항제3호)

☞ (공사실적 인정 범위)

-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은 경우(서면승낙서는 하도급 계약 체결 전에 작성된 경우만 인정)
- 하도급 준 자 : 실제수행한 부분과 하도급 준 공사실적의 1/2 실적 인정
- 하도급 받은 자 : 하도급 공사 실적 인정

· 일괄하도급

- 건설사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법 제29조제1항, 법 제82조제2항 제3호, 법 제96조)

☞ (공사실적 인정 범위)

- 일괄하도급 준 자 : 실제수행한 부분만 실적 인정
- 일괄하도급 받은 자 : 불인정

· 재하도급

-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음(법 제29조제3항, 법 제82조제2항제3호, 시행규칙 제23조10항)

☞ (공사실적 인정 범위)

-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발주자와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받아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서면승낙서는 하도급 계약 체결 전에 작성된 경우만 인정, 100분의 20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하도급 가능)
- 재하도급 준 자 : 실제수행한 부분과 재하도급 준 공사실적의 1/2 실적 인정
- 재하도급 받은 자 : 재하도급 공사 실적 인정

· 종합공사 하도급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해당 건설공사를 하도급 할 수 없음(법 제29조제5항, 법 제82조제2항제3호, 시행규칙 제23조10항)

☞ (공사실적 인정 범위)

-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은 경우(서면승낙서는 하도급 계약 체결 전에 작성된 경우만 인정, 100분의 20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급 가능)
 - 하도급 준 자 : 실제수행한 부분과 하도급 준 공사실적의 1/2 실적 인정
 - 하도급 받은 자 : 하도급 공사 실적 인정

· 직접시공 위반

-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그 공사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시공 해야 함 (법 제28조의2, 법 제82조제2항제2호)

☞ (공사실적 인정 범위)

- 하도급 준 자 : 실제수행한 부분만 실적 인정
- 하도급 받은 자 : 적법하게 하도급 받은 비율만 인정

· 영업정지처분 위반 계약체결

- 법 제82조 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함(법 제83조제8호)

☞ (공사실적 인정 범위) 불인정

허위·과다신고 등의 유형

- 관급자재액을 포함하여 공사실적을 신고한 경우
- 공동도급공사의 타사 시공액까지 포함하여 공사실적을 신고한 경우
- 전년도에 기 신고한 공사실적을 당해연도 공사실적으로 이중 신고한 경우 (업종을 달리하여 이중 신고한 경우 포함)
- 기성실적증명서를 위·변조하여 신고한 경우 : 공사금액 단위 앞 또는 뒤에 숫자를 번조(추가) 기재한 경우 등
- 건설업 이외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 물품구매 및 납품, 장비임대, 조사, 타워크레인, CCTV촬영·설치, 용역(설계용역, 운영위탁 용역) 등의 내용을 공사실적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02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 제도

시공능력평가란?

- 발주자가 적절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실적, 재무상태, 기술능력, 대외신인도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

시공능력평가액의 공시

-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공시 및 건설공사실적 등의 신고 처리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음
- 이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7월말 협회 정보통신망 등에 공시하고 일반인이 시공능력에 관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며, 건설업 등록수첩에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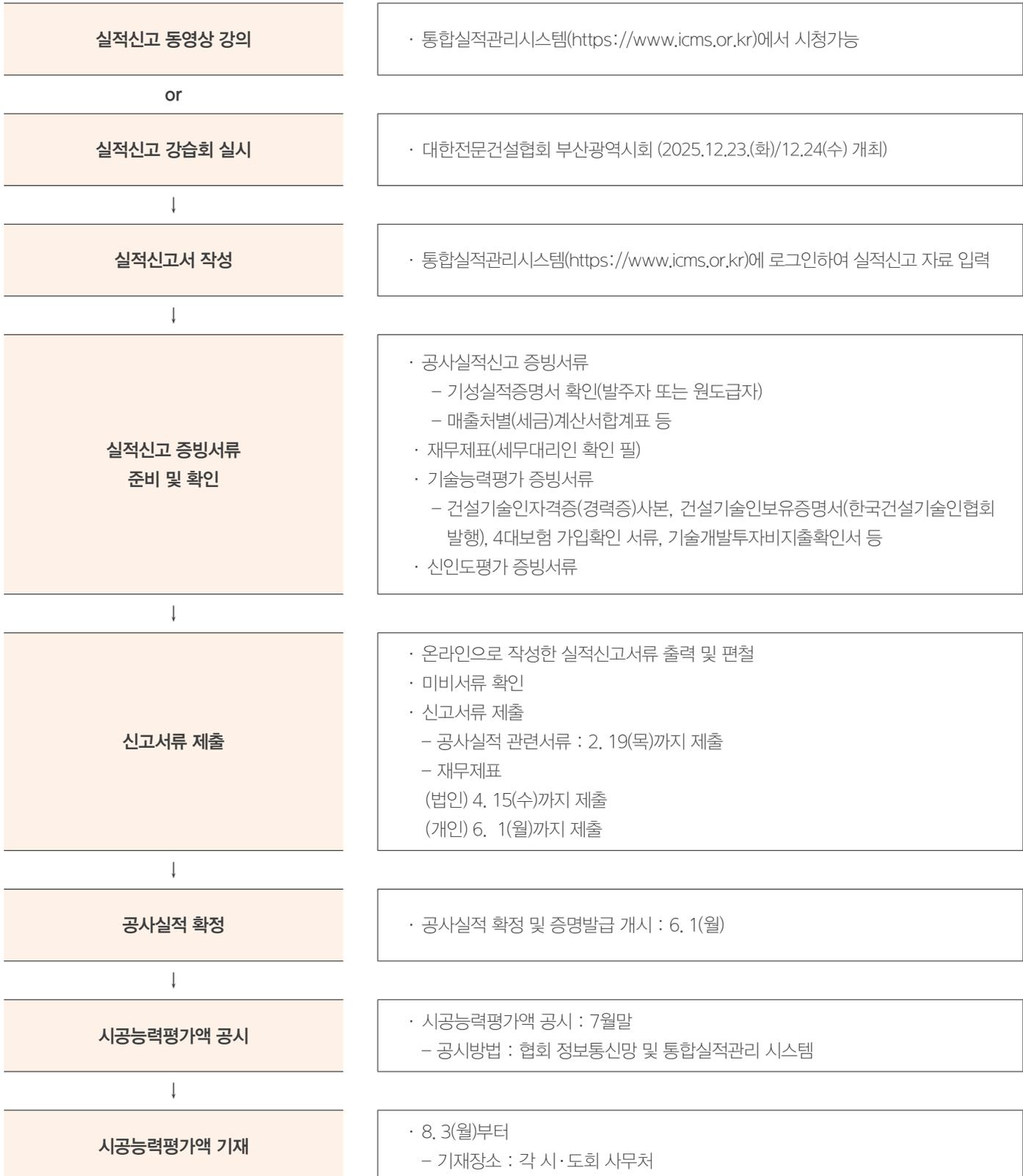
실적신고의 법적신고 기한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매년 2.15일까지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를, 4.15일까지는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규정
 - ※ 2026년 실적신고는 설연휴로 인해 한시적으로 2.19일까지 신고
-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유권해석(국토부 건경58113-139호, 2001.2.7)이 있어 **접수기간 이후 실적서류 접수 불가**

시공능력평가의 활용

-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3항)
-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수급인이 있을 때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3항)
- 제한경쟁입찰에 있어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를 제한할 수 있음(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 종합건설사업자의 협력업체 등록 시, 심사자료 활용

03 2026년도 시공능력평가·공시 절차



04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방법 (건설법 시행규칙 별표2)

【시공능력평가액 = 공사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공사실적평가액

공사실적평가액 = (최근 3년간 해당업종의 건설공사실적 연차별 가중평균액 ÷ 해당업종별 영위기간의 인정계수) × 70/100

※ 인정계수 : 1년 미만=1, 1년 이상 3년 미만=건설업영위월수/12, 3년 이상=3

※ 건설업영위월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절사함

※ 최근 3년간 해당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

(3년 미만 업체의 경우는 단순평균)

【(평가년도 이전 1차년도 공사실적액×1.2)+(평가년도 이전 2차년도 공사실적액×1)+(평가년도 이전 3차년도 공사실적액×0.8)】÷ 3

· 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④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로서 직접 시공해야 하는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를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고 직접 시공한 경우(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경우는 제외한다)

- 직접 시공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실적으로 합산할 수 있다. (직접시공한 금액에 대하여 발주자의 확인서를 제출)

경영평가액

경영평가액=(실질자본금× 경영평점) × 80/100

(1) 실질자본금

-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한다.
- 건설업외의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자인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되, **평가년도 직전년도에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한 경우** 산정된 실질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 이하인 때에는 등록기준상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한다.

① 차입금의존도평점 = 업계전체가중평균비율 ÷ 차입금의존도비율
 【차입금의존도비율 = 차입금*/총자산 × 100】

② 이자보상비율평점 = 이자보상비율 ÷ 업계전체가중평균비율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이자비용 × 100】

③ 자기자본비율평점 = 자기자본비율 ÷ 업계전체가중평균비율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산 × 100】

④ 매출액이익율평점 = 매출액순이익율 ÷ 업계전체가중평균
 【매출액순이익율 = 법인세(소득세)차감전 순이익/매출액 × 100】

⑤ 총자본회전율평점 = 총자본회전율 ÷ 업계전체가중평균비율
 【총자본회전율 = 매출액/총자산】

참고사항	*차입금 항목(예시)
유 동 부 채	
· 관계회사단기차입금	· 유동성외화장기부채
· 단기차입금	· 유동성장기차입금
· 단기사채	· 유동성장기부채
· 단기융자금	· 유동성장기채무
· 당좌차월	· 유동성외화장기차입금
· 어음차입금	· 유동성전환사채
· 유동성사채	· 주주임원종업원단기차입금
· 외화단기차입금	· 가수금
· 유동성금융리스미지급금	· 위 계정과목의 차입금
· 유동성금융리스부채	
비 유 동 부 채	
· 관계회사장기차입금	· 외화신주인수권부사채
· 교환사채	· 장기외화차입금
· 국민주택기금(차입)	· 장기융자금
· 금융리스미지급금	· 장기차입금
· 금융리스부채	· 전환사채
· 금융리스장기차입금	· 주주임원종업원장기차입금(채무)
· 사채	· 차관
· 신주인수권부사채	· 가수금
· 외화금융리스부채	· 위 계정과목의 차입금
· 외화사채	

경영평점 = (①차입금의존도평점+②이자보상비율평점+③자기자본비율평점+④매출액순이익률평점+⑤총자본회전율평점) ÷ 5

· 이 경우 각 각의 평점이 3점을 초과할 때"3", -3 이하인 때에는 "-3"으로 함.

· 업계전체가중평균비율은 **이자보상비율, 자기자본비율 및 매출액순이익율 중 "0"이하인 비율을 제외함**

· 경영평점이 3을 초과한 때에는 "3"으로, -3 이하일 때에는 각각 "-3"으로 함

· 경영평점이 0미만일 경우 경영평가액은 “0”이 되도록 평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 미만인 때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위 경영평가액의 산식 중 실질자본금이 “0” 미만인 때의 경영평가액은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공사실적평가액이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

- 공사실적평가액이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의 ±6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공사실적평가액이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 이상인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의 ±6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기술능력 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 기술능력생산액(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인 1인당 평균생산액 × 보유기술인수 × 30/100) + 전년도 퇴직공제납입금(퇴직공제 피공제자의 기능등급별 가중치를 반영한 금액) + 최근 3년 간의 기술개발투자액

(1) 기술능력생산액

- 실질자본금의 2배 또는 공사실적평가액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함
- 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인 1인당 평균생산액 : 전문건설업계의 국내 총기성액을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인의 총수로 나눈 금액
- 보유기술인수 : 매 연도말 현재 해당업종의 건설업 등록기준에서 인정하는 기술인수

건설기술인 반영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술인	

- 초급기술인 : 초급기술인 수 × 1인
- 중급기술인 : 중급기술인 수 × 1.15인
- 고급기술인 : 고급기술인 수 × 1.3인
- 특급기술인 : 특급기술인 수 × 1.5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인	
-------------------	--

-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장, 기능사, 기능사보 : 기술인 수 × 1인

· 건설업체 설립시 그 대표자가 최초 건설업 등록일 기준으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의 가입경력이 5년 이상이고, 공제부금을 500일 이상 납부한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국토교통부령 제614호, 2019. 3. 26), 2019. 8. 1시행**】

- 대표자가 최초로 건설업체를 설립하여 건설업을 등록한 날이 속한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에 한정하여 그 건설업자가 보유한 기술인 중 해당 업종의 건설업등록기준에서 인정하는 기술인에 대해서는 현행 가중치에 2를 각 각 곱하여 산정함

(2) 퇴직공제 납입금

- 전년도 중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으로 납입한 금액으로 하고, 퇴직공제 피공제자의 기능등급별 가중치는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산정된 피공제자의 기능등급에 따른 가중치를 의미함
- 동법 제7조의5에 따른 기능등급확인증을 발급받은 피공제자에 대한 퇴직공제납입금에는 다음 표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고, 기능등급확인증을 발급받지 않은 피공제자에 대한 퇴직공제납입금에는 5의 가중치를 부여함
- 이 경우 기능등급은 건설공사 실적신고 대상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하고, 여러 직종에 대한 기능등급을 보유한 피공제자에 대한 퇴직공제납입금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등급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함

등급	가중치
초급	7.5
중급	10
고급	12.5
특급	15

(3) 기술개발투자액

- 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해당 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 발생 명세상의 금액 중 건설업에 실제 사용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실질자본금과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50 중 큰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신인도 평가액

신인도 요소별 평가액의 합계액은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pm 50/100$ [(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100$]을 초과할 수 없음

(1) 신기술의 지정, 우수건설업자 지정된 업체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건설공사와 관련된 신기술로 한정)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건설기술진흥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인 경우 최근 3년간 공사실적 연차별 가중평균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함.
- 이 경우 동일분야에서 2개 이상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함

(2) 건설업 영위기간

- 동일업종의 전문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함

(3)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업체

- 직전영업연도에 법제82조제1항1호·**제2항제3호 및 제5호, 제6호**, 제82조의2 및 법제83조제10호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 최근 3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에 영업정지기간(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에 상응하는 영업정지 기간)인 월수를 곱한 금액을 뺌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1호(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할 때) / **제2항제3호(수급인 자격제한 위반, 하도급 제한 위반)**, 제5호(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제6호(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82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으로 영업정지

등을 받은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0호(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惹起)하여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4) 기준재해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6호)

- 직전영업연도 중에 **평균 사망사고 만인율의 1배 이상 1.5배 이내의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평균 사망사고 만인율의 1.5배 초과 2배 이내의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평균 사망사고 만인율의 2배를 초과하여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뺌

(5) 부도업체

- 최근 3년 이내에 부도가 발생한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뺌

(6) 국내인력을 해외건설현장에 고용한 건설업자

- 고용인원수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더하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2/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금액의 2배를 더한다.
- 고용인원수가 1~50명 미만인 경우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 고용인원수가 50~500명 미만인 경우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
- 고용인원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고용인원수는 건설공사 실적신고 대상연도를 기준으로 하되, 3개월 이상 체류한 인력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업체가 고용하고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는 인력만 해당하며 하도급업체가 고용한 인력은 제외
- 해외건설촉진법 제23조에 따라 해외건설협회장으로부터 해외건설현장에 고용된 국내인력에 대하여 해외건설현장 인력고용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해외건설협회의 장은 출입국증명원,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 함

(7) 건설공사 실적 등의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허위제출 사실이 확인된 때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시공능력 평가시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뺐

(8) 공사대금 체불 및 상습체불업체

- 법 제86조의4 및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전년도에 상습 체불건설업자 또는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건설사업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뺐

(9) 건설기술인교육 이수한 자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평가기준이 직전년도에 건설기술인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술인 1인당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를 초과할 수 없음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

- 평가년도 직전년도 중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뺐다.

(11)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결과가 우수한 건설사업자

- 제48조의2제1항 규정에 따른 건설 근로자 고용평가 결과가 우수한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다음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함

구 분	등급배분 기준	고용평가등급	가산비율
전문건설 업체	상위 30퍼센트 미만	1등급	6/100
	전문건설업체상위 30퍼센트 이상 상위 70퍼센트 미만	2등급	5/100
	전문건설업체상위 70퍼센트 이상	3등급	4/100

(12) 건설사업자가 민간공사 현장에서 일체형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 평가년도 직전년도 중에 일체형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감리자 등의 확인서 제출

- 일체형작업발판 설치비율이 30% 미만인 경우 : 최근 3년간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일체형작업발판 설치비율이 30% 이상 40% 미만인 경우 : 최근 3년간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 일체형작업발판 설치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최근 3년간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2020년 1월 1일부터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

(13) 평가년도 직전년도에 법 제34조제1항(법 제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81조제4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뺐**(14) 평가년도 직전년도에 법 제81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 시정명령 횟수를 곱한 금액을 뺐****(15) 평가년도 직전년도에 건설사업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대재해를 유발하여 동법 제6조 및 제7조, 제10조, 제11조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뺐다.****(16) 평가년도 직전년도에 건설사업자가 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 포상 횟수를 곱한 금액을 더한다.****기타사항**

-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건설사업자와 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양수한 건설사업자의 당해연도 시공능력 및 다음연도 시공능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경영평점은 “1”로 한다. 다만, 건설업을 영위하던 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의 등록을 하거나 건설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이미 평가한 경영평점을 적용할 수 있음
- (2) 20이상의 전문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거나 둘 이상의 주력분야를 등록한 건설산업자의 시공능력평가시 업종별·주력분야별로 구분하여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신인도평가액을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 (3) 산정한 시공능력평가액이 “0”이하인 경우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0”으로 한다.



영업정지처분 기간중 변경계약 가능 여부

질의

건설산업기본법 14조에 보면 영업정지 처분일 전에 시공중인 공사는 계속하여 시공 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변경계약 또한 가능하다는 건지요? 신규입찰 및 신규 계약만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만약 영업정지 기간 중 변경계약을 못한다면 발주처 재량으로 할 수도 있습니까?

회신

1.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동 정지처분 기간동안에는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영업의 정지란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의 체결 및 입찰, 견적 등 이에 부수되는 행위의 정지로 보는 것이므로 발주자가 실시하는 현장설명에 참가하거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것까지도 금지되는 것입니다.
2. 다만, 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이를 계속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도 발주자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합니다.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원도급계약상 공사범위내에서 사회보험 정산 및 신규 물량이 아닌 설계변경, 물가 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변경계약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 전자민원, 2019.05.24



행정처분 예정중인 자가 건설업의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토목공사업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신청한 경우 건설업 등록 수리 가능 여부

회신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어야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2. 귀 질의와 같이 토목공사업을 등록하여 영위하는 자가 동법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영업정지)의 대상이 되고 그 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비록 그에 따른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신청하더라도, 위 조항의 취지에 따라 새로운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 전자민원, 2019.05.24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판결
 사건명: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판시사항

1.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는 언제 발생하는지 여부
2. 위와 같은 직접지급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하수급인이 실제로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하기 이전에, 수급인의 제3채권자가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가압류한 경우, 그 압류된 금액에 대해서도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 시점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은 하수급인이 직접 지급을 청구한 때가 아니라,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간에 직접 지급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때 발생함.
 - 이 합의가 성립하면,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채무는 소멸함. 또한, 해당 범위의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하수급인에게 이전됨.
2. 수급인 채권자에 의한 압류의 효력
 - 직접지급 합의 이전에 수급인의 제3채권자가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가압류한 경우에는, 그 압류된 금액에 대해서는 이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음.
 - 그러나 직접지급 합의 이후에 이루어진 압류라면, 이미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였으므로, 해당 압류는 소멸한 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효력이 없음. 해당 압류는 소멸한 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효력이 없음.
3. 원심 판단의 위법성
 - 원심은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한 시점에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한다”는 전제하에, 그 이전에 이루어진 압류를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부정하고, 직접지급 합의 시점에 이미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아, 그 이후 이루어진 압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시사점

1.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 시점'을 명확히 정리한 판결

- 하수급인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실제 지급 청구 여부와 무관하게 '직접지급 합의 시점'을 기준으로 권리 발생을 인정함.

2. 수급인 일반채권자보다 하수급인을 우선 보호

- 직접지급 합의 이후에는, 수급인의 채권자들이 압류하더라도 하수급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3. 실무상 계약·합의 시점 관리의 중요성 부각

-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간 직접지급 합의의 체결 시점이, 향후 공사대금 귀속 및 채권자 분쟁에서 결정적 기준이 될 수 있음.

4. 혼합공탁·공탁금 출급 분쟁에서 기준 제시

-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혼합공탁한 경우, 어느 채권자가 우선 출급권을 가지는지 판단하는 핵심 법리를 제시함.

의의

1. 대상 판결을 통해 직불합의가 있는 경우 특별법인 하도급법이 건설산업기본법보다 먼저 적용되어 직불 합의 이후에 이루어진 수급인의 채권자들에 의한 가압류 및 압류 등은 효력이 없는 것이 명확해짐.

2. 건설 공사 현장에서도 발주자로서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직불 합의 부분에 대하여 공탁하지 않더라도 이중 변제 위험 등에서 벗어날 수 있고 관련 분쟁의 소지가 줄어드는 계기가 될 수 있음

건설관련 법 상담

공기 지연으로 인한 돌관공사비, 누구 책임인가?

A사는 국립 컨벤션센터 부대시설 공사를 B사로부터 하도급받았으나, 토질 평가와 지반 붕괴 우려 등으로 착공이 지연됐다. A사는 공기 연장을 요청했으나 B사가 이를 거절하면서, 공기 준수를 위해 자체적으로 야간작업 및 돌관공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자재비·인건비 상승과 추가 작업비가 발생했고, A사는 그 비용을 B사에게 청구했지만 B사는 “돌관공사를 지시한 적이 없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A사는 착공 지연이 자신의 귀책이 아니며, 부득이하게 작업을 강행한 만큼 비용 보전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 답변 : 원칙적으로 하도급업체는 정해진 공사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의무가 있으며, 원도급자의 명시적 지시 없이 진행된 돌관공사 비용은 청구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그러나 본 사안은 A사 귀책 없이 공기 지연이 발생했고, A사가 공기 연장 요청을 했음에도 B사가 이를 거부함으로써 추가작업이 사실상 불가피했다는 점에서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A·B사 계약서에도 “도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야간작업을 지시한 경우 비용은 도급인이 부담한다”는 예외 조항이 존재한다.

여기서 ‘지시’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가 없으며, 공사 진행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공기 압박 상황 자체가 사실상의 지시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 최근 판례 및 실무 해석 방향이다.

국가계약법은 공공공사 기준이지만, 민간공사에도 원용 가능하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공기 지연에 B사의 책임이 존재하고 연장 요청을 거절했다면 비용 부담 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출처] 대한전문건설신문(<https://www.koscaj.com>)

- 황보 윤 법무법인 공정 변호사

이수용 세무사의 '건설기업 세무회계'

<건설업 기업진단 유가증권의 평가 (1)>

건설업 기업진단지침 제16조 유가증권의 평가에 대해 소개합니다.

1. 유가증권의 정의

건설업채기업진단지침은 유가증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유가증권은 보유기간 또는 보유 목적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구분되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구분된다.'

유가증권은 재산을 나타내는 증권으로서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나누어집니다. 지분증권은 회사, 조합 등의 순자산에 대한 소유자 지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통주, 우선주, 수익증권, 출자증권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투자자의 과실은 배당입니다. 채무증권은 발행자에 대해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유가증권으로 국채, 공채, 회사채 등이 있으며 투자자는 발행자의 부채에 투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과실은 이자입니다.

2. 유가증권의 자산성 분류

기업진단지침 제7조와 제16조는 건설업자가 보유하는 유가증권의 자산성을 아래와 같이 분류합니다.

- ① 부실자산 :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를 확인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 ② 겸업자산 : 지침에서 실질자산으로 열거한 3가지를 제외한 유가증권은 겸업자산으로 봅니다. 대표적으로 비상장주식은 건설업과 무관한 투자목적으로 겸업자산으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 ③ 실질자산 : 지침에서 열거한 3가지

3. 지침에서 실질자산으로 열거하는 유가증권의 범위

위의 ③에 해당하는 실질자산인 유가증권은 아래의 3가지로 규정됩니다.

- ① 특정건설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 취득하는 특수 목적 법인(SPC)의 지분증권
- ② 진단대상사업과 관련된 공제조합 출자금
- ③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원사로부터 발급받은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유가증권



이수용 세무사

코타 조세연구소 대표

[출처]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부산 전문건설업체 등록현황

(2025. 12. 31. 기준)

지 역	업체수	등록수
중구	40	64
동구	69	114
서구	30	40
사하구	103	149
영도구	23	41
동래구	233	317
남구	130	172
금정구	293	432

지 역	업체수	등록수
연제구	172	258
해운대구	299	414
수영구	139	221
부산진구	191	264
북구	106	148
사상구	159	210
강서구	323	458
기장군	241	363
합계	2,551	3,665

부산 진출·입 전문건설업체 현황

(2025. 10. 01. ~ 2025. 12. 31.)

전출업체 현황

(주)건운 (대표자: 박진영, 경남)

(주)남운건설 (대표자: 윤준호, 울산)

동진티에스엠(주) (대표자: 한상익, 서울)

(주)두원건설 (대표자: 이두하, 경북)

(주)베스트시스템 (대표자: 김창동, 경남)

(유)서우건설 (대표자: 김성수, 경기)

코리아탑금속(주) (대표자: 최아영, 대구)

(주)티제이로드아트 (대표자: 김채은, 강원)

전입업체 현황

건창이앤씨(주) (대표자: 손인영, 충북)

(주)금동종합건설 (대표자: 공미연, 강원)

(주)대원글로벌건설 (대표자: 문대훈, 대구)

(주)동남엘리베이터서비스 (대표자: 송영숙, 경남)

(주)미르건설 (대표자: 이정현, 충남)

(주)삼보건설 (대표자: 정미숙, 경남)

(주)소라 (대표자: 김소라, 서울)

아민더블유씨(주) (대표자: 공기연, 경남)

엠비엔트디자인스튜디오 (대표자: 고무성, 대구)

에스에스이엠(주) (대표자: 김정년, 경남)

(주)해월수중개발 (대표자: 김영민, 경남)

부산 전문건설업체 상호변경 현황

(2025. 10. 01. ~ 2025. 12. 31.)

변경전	변경후
오션씨엔아이(주)	대한오션웍스(주)
아민더블류씨(주)	아민더블유씨(주)
박반장인테리어(주)	어바웃홈(주)
(주)미래디자인	(주)엘리하우징
(주)주원건축	(주)주원창호
(주)벽성기업	(주)티제이로드아트

부산 전문건설업체 대표자변경 현황

(2025. 10. 01. ~ 2025. 12. 31.)

상호명	변경전	변경후	상호명	변경전	변경후
(주)경도그룹	김연주	김연화	(주)서경개발	배우균	배우화
(주)경연	김원경	제소연	(주)송정건설	이창준	이대혁
(주)경진테크	조삼규	조경연	아민아이씨(주)	공가연	김강인
광산이엔씨(주)	김정호	김정호,윤경미	(주)아우름파트너스	김지혜	추성욱
(주)그린프로젝트	강민재	이선혜	에코지반(주)	이지나	김성훈
(주)너른건축	정자경	정자경,주균호	(주)엘리하우징	조영진	유중동
(주)다경건설산업	장재근	최대성	영흥건설(주)	김동욱,이종호,김미정	이종호
(주)더난건설	홍봉준	손승욱	와이케이이엔지(주)	윤영일	신선화
동산공영(주)	전상현	장웅진	(주)유건알미늄	유인숙	전인주
(주)레몬하우스	김선희 외 19명	김선희 외 21명 (고민지, 배용진 취임)	(주)유니브원	이재근	이춘식
(주)레몬하우스	김선희 외 21명	김선희 외 22명 (제신제 사임, 여현모, 고정윤 취임)	(주)이선건설	한진후,김익규	김익규,허성환
(주)명광건설	김영주	송여순	(주)재연조경	이경민	차승철
배성건설(주)	고길순	최상희	(주)컴포즈커피	김진성	김홍석
(주)베스트케이	김유진	김현주	(주)티제이로드아트	김정욱	김채은
(주)베스트케이	김현주	김유진	(주)포레건설	문진광	이창준
(주)보천건설	추창근	정서연	(주)하나토건	남영숙	장종태

부산시회 신규회원 현황

(2025. 10. 01. ~ 2025. 12. 31.)

 <p>대선수중개발(주)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항로182번길 20 (구평동) T : 051-203-3302 보유업종 : 수중·준설 공사업</p> <p>김경수</p>	 <p>비건아이브이(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0, 본동 909호 (재송동, 큐비이센터) T : 051-791-2019 보유업종 : 실내건축 공사업</p> <p>조주원</p>	 <p>소소한컴퍼니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주로 18, 1층 (주례동) T : 070-7766-0913 보유업종 : 실내건축 공사업</p> <p>김수연</p>
 <p>(주)신명이엔씨 부산광역시 동래구 아시아 드대로181번길 46, 1층 (사직동) T : 051-506-6600 보유업종 : 도장·습식· 방수·석공사업</p> <p>김민준</p>	 <p>에이치피건설(주) 부산광역시 사하구 운곡단로 14번길 51, 2층 (다대동) T : - 보유업종 : 지반조성·포장 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p> <p>하승미</p>	 <p>인우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759, 709호 (수영동, 알파오피스텔) T : 051-743-0991 보유업종 : 실내건축 공사업</p> <p>강미숙</p>
 <p>(주)청미도장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성로 14, 1층 (수영동) T : 051-759-0482 보유업종 : 도장·습식· 방수·석공사업</p> <p>이선찬</p>	 <p>(주)카람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예 전로 4, 2층 (청룡동) T : 051-717-2961 보유업종 : 조경식재· 시설물공사업</p> <p>구자봉</p>	 <p>케이앤뮤즈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산단7로 8-20, 1층 케이 앤뮤즈(정관읍) T : 051-914-3370 보유업종 : 도장·습식· 방수·석공사업</p> <p>김소정</p>
 <p>케이에스티이엔씨(주) 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 393, 301호(수영동) T : 051-783-0068 보유업종 : 철강구조물 공사업</p> <p>박상태</p>	 <p>펜리르(주) 부산광역시 연제구 범원남로 16번길 27, 809호 (거제동, 현성노블레스) T : - 보유업종 : 실내건축 공사업</p> <p>김수현</p>	 <p>KOSCA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p>

KOSCA 중앙회 업무단신

- ▷ 중앙회(회장 윤학수)는 12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민병덕 을지로위원회 위원장과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병진 의원, 안도걸 의원, 정진욱 의원, 신영대 의원)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앞서 지난 2024년 10월 노사 간 이뤄진 건설산업 지속 발전을 위한 상생협약 및 전문건설업계 5대 현안과제 개선에 대한 경과를 공유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으며, 협회는 5대 현안과제로 △타워크레인 운영체계 개선 △유급휴일 수당 등 하도급공사 간접비 반영 △퇴직공제부금 제도개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강화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확대 지원 △건설업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준수를 위한 정책 지원 등을 건의했다.
- ▷ 중앙회(회장 윤학수)는 11월 28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상생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양 기관은 지난 2016년부터 'LH-대한전문건설협회 동반성장 TF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간담회를 통해 전문건설업계의 현안을 공유하며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협회는 이 자리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활성화 △복합 유지 보수공사의 전문공사 발주 활성화 △과도한 입찰참가 자격 요건 개선 △건축물 철거공사 관련 적정공사비 개선 △구조물해체 공사 분리발주 등을 건의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업무단신

- ▷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은재, 이하 K-FINCO)이 충북 음성 기술교육원 본원에 건설안전체험장을 구축하고, 비숙련 외국인력(E-9비자)을 대상으로 한 특화 훈련 과정을 새롭게 개설했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따라, 건설현장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 역량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특히 비숙련 외국인력의 입국 전 맞춤형 교육 활성화와 입국 후 특화훈련 확대라는 정부 정책 방향에 발맞춰, 현장 적응과 안전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교육은 5일간 총 34시간 과정으로 운영되며, 교육비와 숙식비는 전액 무료이며, 교육 신청은 K-FINCO 기술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기술교육원(043-879-2413)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시회 2026년 1/4분기 주요일정 안내

일자	주요일정	비고
2026. 2. 4(수), 11:00	제41회 정기총회	
2026. 2. 19(목)	2025년도 건설(전문)공사 1차 실적신고 접수 마감	
2026. 2. 27(금), 14:00	4대 사회보험 및 노동관계법령 강습회	
2026. 3월 중	제1차 전문건설인 경영포럼	
2026. 3월 중	제1차 부산전문건설인 산행	

※ 상기 일정은 협회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건설업 교육 일정안내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설교육센터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최고의 건설업 윤리 및 실무종합 교육기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근거하여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한 자(건설사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한 경우 제외) 및 영업정지 기간 중인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건설업 신규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 미이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교육이수가 의무적이며, 영업정지기간 중인 건설업체의 경우는 동 교육 이수 시 영업정지기간이 최대 15일 감경될 수 있기에 교육이수가 권장된다.

2026년도 건설업 교육 일정 안내

01 교육대상

- **의무교육대상 : 신규건설 등록업체**
 - 6개월 이내 등기임원(대표자 포함) 중 1인 교육 이수
 - **벌칙: 6개월 이내 미이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 및 제99조
- **임의교육대상 : 영업정지 처분업체**
 - 영업정지 기간 내 교육 이수
 - **감경기준 : 대표자 15일, 등기임원 1인당 5일 감경**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02 교육내용 및 비용

- **내용 :** 건설산업관련법령(건산법·하도급법·계약법), 건설품질·환경·안전관리, 윤리경영
- **시간 :** 8시간 (09:00~18:00)
- **교육비용 :** 집합교육 150,000원 / 이러닝교육 135,000원

03 교육신청 및 결제방법

-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 및 교육비 결제 (신용카드, 계좌이체)**
 - 건설교육센터 <http://edu.kosca.or.kr>
(팩스 02-3284-1066)
 - 입금계좌 : 기업은행 525-001144-04053
(예금주 (사)대한전문건설협회)
- **문의 :** 건설교육센터 ☎ 02-3284-1076, 1080

04 2026년 온라인(이러닝)교육 일정 (1~3월)

교육차수	신청 마감일	학습가능 기간		비고
		부터	까지	
제1기	1. 5	1. 8	1.14	
제2기	1.12	1.15	1.21	
제3기	1.19	1.22	1.28	
제4기	1.26	1.29	2. 4	
제5기	2. 2	2. 5	2.11	
제6기				
제7기	2.23	2.26	3. 4	
제8기				
제9기	3. 9	3.12	3.18	
제10기	3.16	3.19	3.25	
제11기	3.23	3.26	4. 1	
제12기	3.30	4. 2	4. 8	

05 2026년 집합교육 일정(1~3월)

교육차수	교육일정	지역	장 소
제1기	01월 14일	서울	○ 서울 전문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 5길 15)
제2기	01월 21일	수원	○ 경기 전문건설회관 3층 회의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19)
제3기	01월 28일	서울	○ 서울 전문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 5길 15)
제4기	02월 04일	대구	○ 대구 전문건설회관 7층 회의실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47)
제5기	02월 11일	전주	○ 전북 전문건설회관 8층 회의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693)
제6기	02월 25일	서울	○ 서울 전문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 5길 15)
제7기	03월 04일	세종	○ 세종중앙타운 7층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센터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
제8기	03월 11일	수원	○ 경기 전문건설회관 3층 회의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19)
제9기	03월 18일	제주	○ 제주 전문건설회관 8층 회의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17)
제10기	03월 25일	서울	○ 서울 전문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 5길 15)

2025-건설안전실-1218

동절기 건설현장 핵심안전수칙

1 동절기 사고유형별 핵심수칙

개구부·단부에서 떨어짐



*단부: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

- ✓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 ✓ 개구부 덮개 설치
- ✓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거푸집 및 등바리 등 무너짐



- ✓ 구조검토 후 조립도 작성·준수
- ✓ 콘크리트 분산타설 및 양생기간 준수
- ✓ 타설 중 출입금지, 이상 발견 시 대피

갈탄에 의한 중독·질식



- ✓ 화석연료 대신 열풍기 사용
- ✓ 출입 전 가스농도 측정

용접 작업 중 화재



- ✓ 불티비산 방지조치 실시
- ✓ 소화기 설치 및 화재감시자 배치

2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따뜻한 옷



따뜻한 쉼터
(휴식)



따뜻한 물



작업시간대
조정



119신고

동절기
안전보건 길잡이
바로가기



동절기 위험요인별 핵심점검사항

위험요인	핵심점검사항	확인
떨어짐	● 추락위험장소에는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을 설치	
	● 개구부에는 덮개를 설치하고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	
	● 작업자는 항상 안전모 착용 및 안전대 체결	
무너짐	● 거푸집 및 동바리는 구조검토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준수	
	● 콘크리트 분산타설 및 양생기간 준수	
	● 콘크리트 타설 중 작업자 출입금지, 이상 발견 즉시 대피	
중독	● 콘크리트 보온 양생 시 갈탄·숯탄 대신 열풍기 사용	
	● 밀폐공간·지하작업장 출입 전 가스농도 측정 및 보호구 착용	
화재	● 용접·용단 불티가 튀지 않도록 불티비산 방지조치* 실시 * 용접방화포 또는 비산방지덮개	
	● 소화기 비치 및 화재감시자 배치	
한랭질환	● 따뜻한 옷, 따뜻한 물, 따뜻한 쉼터(휴식) 제공	
	● 한파주의보 : 작업시간대 조정 및 작업시간 단축 ● 한파경보 : 추운시간대(새벽) 옥외 작업중지 및 최소화	
	● 한랭질환자(의심자) 발생 시 즉시 119 신고	

* 출처 : 안전보건공단

부산의 숨은 명소

도시와 자연이 가장 부드러운 선으로 맞닿는 곳

장산



부산의 해운대에 자리한 장산은 해발 634m로 부산 해운대구와 기장군 사이에 위치한 산이다. 도심과 가까워 접근성이 뛰어나며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생활 산이다. 정상에서는 해운대 해안선과 광안대교, 기장 앞바다가 한눈에 펼쳐져 시원한 전망을 감상할 수 있다. 산 곳곳에는 억새밭과 계곡, 군부대 시설의 흔적이 남아 독특한 풍경을 이룬다. 사계절마다 다른 표정을 보여 주어 언제 찾아도 새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산이다.

정상에 오르는 길을 따라 천천히 발걸음을 내딛다 보면, 장산이 왜 부산 시민들에게 ‘숨은 전망 명소’로 불리는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다. 산 초입에서는 도심의 건물들이 어지럽게 펼쳐 지지만, 조금만 올라가면 도시의 소음이 순식간에 멀어지고, 바람의 결이 바뀐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마치 도시와 자연의 경계선을 스스로 찾아가는 기분이 든다.

장산의 가장 큰 매력은 **전망이 겹겹이 쌓여 있다**는 점이다. 중턱에서는 해운대의 고층 빌딩들이 한눈에 들어오고, 그 뒤로 광안대교의 곡선 구조가 실선처럼 따라붙는다. 날씨가 맑은 날에는 광안리 바다의 반짝임까지 선명하게 보인다. 시야가 트일 때마다 조금씩 다른 부산의 얼굴이 나타나, 마치 여러 도시를 동시에 여행하는 듯한 기분을 선사한다.

또한 장산은 **계절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곳**이다. 봄에는 벚꽃과 새순이 길을 환하게 열어주고, 여름에는 짙은 녹음이 터널을 만들며 등산객을 감싼다. 가을에는 능선을 따라 단풍이 그라데이션을 그리듯 물들고, 겨울에는 바람이 차갑게 맞히며 선명한 시야가 펼쳐져 도시와 바다의 경계가 더 명확해진다. 사진이나 잡지 지면에는 계절에 따라 전혀 다른 표정을 담을 수 있어 콘텐츠 활용도 또한 높다.

장산 정상에 도착하면 이곳의 진짜 가치가 드

러난다. 정상에서 바라보는 부산은 그동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해운대와는 또 다른 모습이다. 바다와 도시가 수평선과 수직선처럼 깔끔하게 나누어져 있고, 도로와 건물 라인이 하나의 거대한 지도로 정리된 듯 눈앞에 펼쳐진다. 그 위에 부드럽게 흘러가는 바람은 도시의 복잡함을 잠시 잊게 하고, 부산이라는 도시에 숨겨진 균형감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한다.

하산길 역시 장산의 특별함을 완성한다. 내려오는 길에는 고즈넉한 산책로와 작은 계곡, 억새밭 등이 조용히 이어져 하루 일정이 '명상'으로 마무리된다. 산을 오를 때와 내려올 때의 느낌이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장산은 단순한 등산 코스가 아니라 부산이 가진 자연의 리듬을 가장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바다·도시·산이라는 부산의 세 요소가 가장 조화롭게 만나는 곳. 그래서 장산은 '부산을 가장 부산답게 볼 수 있는 장소'라고 불릴 만하다.



사막의 돌에 새겨진 시간

페트라 유적

요르단 남부의 와디 무사(Wadi Musa)라는 작은 마을에서 사막 길을 따라가다 보면, 지도에서 점 하나로 표시되던 장소가 나타난다. 바로 고대 도시 페트라(Petra)다. 암만에서 남쪽으로 약 240km 떨어진 이 지역은 한때 나바테아 왕국의 수도였으나, 오랜 세월 동안 모래와 바위 아래에 묻혀 역사 속에서도 잊혀졌던 도시다. 페트라의 입구인 '시크(Siq)'는 양옆으로 높게 솟아오른 붉은 사암 절벽 사이에 길게 뻗은 협곡으로, 약 1km에 걸쳐 이어지는 좁은 길을 지나야 도시 내부로 들어설 수 있다. 위로부터 떨어지는 햇빛에 따라 절벽의 색은 분홍에서 주홍, 보랏빛까지 변화하며 독특한 풍경을 만들어낸다. 자연 침식이 오랜 세월 동안 조각해낸 이 협곡은 방문객이 고대 도시의 핵심부에 도달하기 전 긴 여정을 통해 점차 긴장감과 기대를 쌓아가게 하는 구조로도 해석된다.

협곡의 끝에서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내는 건축물은 페트라의 상징으로 알려진 '알 카즈네(Al-Khazneh)'다. 붉은 사암을 통째로 깎아 세운 이 구조물은 약 40m 높이의 정면을 갖추고 있으며, 그리스식 기둥 양식과 정교한 조각 장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건물의 외관은 자연 채광 아래에서 금빛으로 반사되며, 시간대에 따라 완전히 다른 표정을 드러낸다. 과거에는 이 건물 내부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믿어 '파라오의 보물창고'라는 별칭이 붙었지만, 실제로는 장식적 외관이 두드러지는 왕족의 무덤으로 추정된다.

알 카즈네를 지나 도시 내부로 더 들어가면 바위 속에 새겨진 건축물들이 끝없이 이어진다. 왕들의 무덤, 원형 극장, 회당, 제단 등이 모두 사암 절벽을 깎아 만들어져 있어, 자연 지형과 인공 구조가 혼합된 독특한 도시 형태를 보여준다. 바람과 시간의 침식으로 생긴 색채 변화와 곡선은 자연의 힘과 인간의 기술이 공존하는 흔적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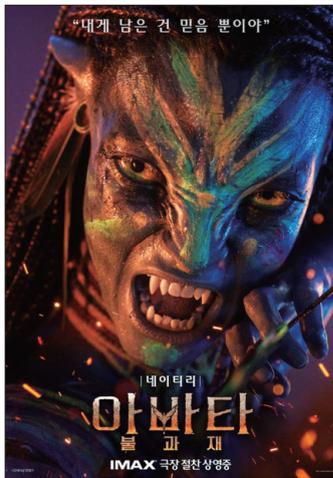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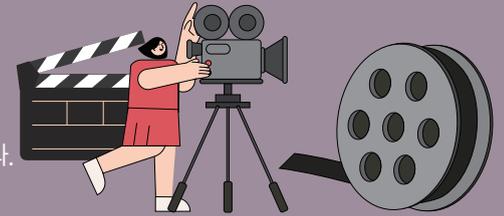
산길을 따라 더 높은 곳으로 오르면 '알 데이르(Ad-Deir, 수도원)'가 자리한다. 이곳은 알 카즈네보다 단순하면서도 더욱 거대한 형태를 갖고 있으며, 주변 협곡과 사막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지점으로 유명하다. 고대 나바테아인들은 이와 같은 고지대에 건축물을 배치함으로써 종교적·상징적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페트라는 단순한 유적지가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자연과 문명이 서로 겹쳐지며 형성한 독특한 도시 유산이다. 붉은 사암 협곡과 절벽 안에 새겨진 건축물들은 고대인들의 기술력과 미적 감각, 그리고 사막 환경에서의 생존 방식까지 보여주는 귀중한 기록이다. 때문에 페트라는 흔히 "잃어버린 도시"로 불리지만, 동시에 시간이 지나도 존재감을 잃지 않는 상징적 장소로 평가되고 있다.



소통하는 문화공간

Healing Movie

잔잔한 여운과 따뜻한 감동을 남기는 영화는 메말랐던 감성을 풍부하게 만들며 생각을 환기시킨다. 잊고 있던 마음의 여유를 찾아줄 흥미롭고 감동적인 영화를 소개한다.



아바타: 불과 재

개봉 2025.12.17 감독 제임스 카메론

출연 샘 워싱턴, 조 셀다나, 시고니 위버, 스티븐 랭, 케이트 윈슬렛

제임스 카메론의 새로운 장편(아바타: 불과 재)는 이전 시리즈가 열어준 판도라의 세계를 더욱 원 초적이고 뜨겁게 확장한다. 이번 작품은 '불의 부족'이라 불리는 나비족의 새로운 문화를 중심으로, 자연과 생명, 그리고 생존의 대립을 더욱 극적으로 그려낸다.

영화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떠돌던 제이크 설리와 네이티리가 새로운 위협에 맞서는 과정을 따라간다. 불의 부족은 강력하지만 위험한 에너지에 의지해 살아가는 종족으로, 그들의 문화와 의식, 그리고 생존 방식은 완전히 새로운 미학과 세계관을 선보인다. 불을 다스리는 것은 곧 생명을 지키는 일이자, 동시에 생명을 앗아가는 위협이 되기도 하기에 이들의 삶은 균형과 긴장의 연속이다. 감독은 이번 작품에서 자연의 힘을 더욱 압도적으로 담아낸다. 물과 불, 숲과 용암이 서로 충돌하며 만들어내는 장면들은 시각적으로 숨을 멎게 할 정도로 웅장하다. 특히 불의 부족이 사는 화산 지대는 빛과 그림자, 붉은 열기와 어둠이 교차하며 마치 또 다른 행성처럼 보인다. 판도라의 생태계는 더 넓어졌고, 그만큼 더 생생하고, 더 위험하며, 더 아름답다. 결국 영화는 다시 묻는다.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그리고 무엇이 우리를 가족으로 묶는가?”

제이크와 네이티리는 위협 속에서도 서로를 지키기 위해 선택을 반복하고, 그 과정에서 가족의 의미는 더욱 깊어진다. 여행을 떠나는 관객 역시 판도라의 새 풍경을 눈에 담으며, 자연과 인간(혹은 나비족)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주토피아2

개봉 2025.11.26 감독 자레드 부시, 바이론하워드

출연 지니퍼 굿윈, 제이슨베이트먼, 키 호이 관



전편 이후, 주디 홉스와 닉 와일드는 이제 도시 곳곳을 책임지는 베테랑 형사로 성장했다. 하지만 주토피아의 화려한 빛 아래에는 점점 깊어지는 불안이 드리워져 있다. 평화롭던 도시 곳곳에서 이상한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고, 서로 다른 종족 사이의 긴장은 다시 조용히 고개를 든다. 겉으로는 정상처럼 보이지만, 도시의 심장은 어딘가 불규칙하게 뛰고 있는 것이다.

이때, 주토피아 전역을 뒤흔드는 대형 사건이 발생한다. 도시의 안전을 책임지던 한 핵심 인물이 갑작스러운 범죄에 연루되면서 시민들의 불신이 폭발하고, 질서가 빠르게 무너져 내린다. 주디와 닉은 사건의 배후를 찾기 위해 다시 한 번 손을 맞잡는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구역—황야지대, 고층 빌딩 지대, 수상 운송 구역 등—이 등장하며 주토피아라는 세계가 한층 더 입체적으로 확장된다.

두 주인공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건을 바라보면서 충돌도 겪는다. 주디는 끝없는 이상을 향해 뛰어가지만, 닉은 현실의 벽을 똑바로 바라보려 한다. 그들의 대립은 주토피아가 가진 가장 큰 고민인 다양성 속에서 어떻게 하나의 공동체가 유지되는가를 다시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도 영화는 특유의 유머와 따뜻함을 유지한다. 사소한 장면에서도 동물 캐릭터들의 개성 넘치는 표정과 풍자는 빛을 발하고, 도시의 크고 작은 움직임을 관찰하는 재미는 여전히 살아 있다. 결국 주토피아 2는 이렇게 말한다.

“완벽한 세상은 없지만, 함께 만들어갈 수는 있다.”

주디와 닉이 다시 한 번 도시를 구해내며 찾아내는 진실은, 관객들에게도 작은 희망을 건넨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믿을 수 있는 누군가와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주토피아의 진짜 힘이라는 걸 보여주는 작품이다.

소통하는 문화공간

Healing 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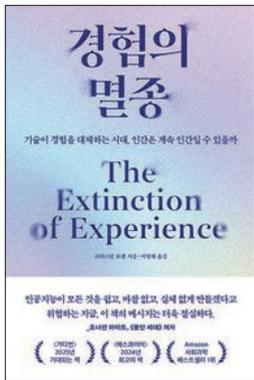
하루하루를 챗바퀴처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잠시나마 쉬어갈 수 있는 영혼의 안식처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틈틈이 읽을 만한 분야별 힐링 북을 소개한다.



혼모노

성해나 저 / 출판사 창비 | 발매일 : 2025년 03월 28일

소설집『혼모노』는 ‘진짜’를 뜻하는 일본어 본모노에서 온 제목처럼, 진짜와 가짜의 경계를 탐구하는 작품이다. 인터넷에서 비하적 의미로 쓰이며 변질된 단어의 흐름처럼, 현대 사회에서 거짓도 다수가 믿으면 진실처럼 보이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비춘다. 표제작에서는 30년 경력의 박수무당 문수가 주인공이다. 오랜 세월 모셔온 신령 ‘장수할멈’이 자신을 떠나 젊은 무당 신애기에게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그의 세계가 뒤흔들린다. 문수는 ‘가짜’라도 무당으로 살아남으려 애쓰지만, 신애기의 조소와 새로운 방식 앞에서 자신의 신념이 진짜였는지 끝없이 흔들린다. 두 무당의 갈등은 전통과 변화, 신구 세대 대립으로 확장되며, 문수는 분노와 연민 사이에서 “진짜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마주한다. 『혼모노』는 개인의 정체성 혼란을 넘어 사회적 균열까지 비추며 진실의 기준이 모호한 시대에 깊은 울림을 남기는 소설집이다.



경험의 멸종

크리스틴 로젠 저 / 출판사 어크로스 | 발매일 2025년 05월 20일

『경험의 멸종』은 기술이 인간의 직접 경험을 서서히 대체하며 우리의 삶과 사고방식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분석하는 책이다. 저자는 오늘날 청소년들의 64%가 SNS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투표권을 포기하겠다고 답한 조사 결과를 예로 들며, 디지털 경험이 현실 경험보다 우위에 놓인 시대가 도래했음을 지적한다. 지도 없이 길을 찾거나 대면으로 소통하는 일은 불편하고 비효율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대신 기술로 매개된 ‘매끄럽고 최적화된 경험’이 선호된다. 빅테크 기업은 이윤을 위해 실패 가능성이 거의 사라진 유사 유토피아적 환경을 제공하고, 사람들은 불확실한 현실보다 편리하고 통제 가능한 디지털 세계에 몰입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책을 읽고 생각하며 몸으로 부딪히는 인간적 경험은 소멸의 위기에 놓인다. 독서는 요약 요청으로 대체되고, 문서 작성은 시가 대신하며, 창작은 지시어 입력으로 끝난다. 저자는 이 흐름이 지속된다면 인간 고유의 경험이 사라지고 ‘우리’라는 공동체 감각마저 붕괴된다고 경고한다. 동시에 이러한 변화는 운명이 아니라 선택이라며, 기술이 빼앗은 현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적 노력과 인간적 경험을 의식적으로 되살리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진보를 위한 주식투자

이광수 저 / 출판사:21세기 북스 | 발행일 : 2025년 12월 17일

경제적 선택이 사회 변화를 이끄는 새로운 투자 교과서
 지금 한국 증시는 단순한 자산시장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정부가 추진하는 증시 정상화, 기업가치 제고, 금융 접근성 확대 정책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개인 투자자에게 유례없는 기회가 열리고 있다. 과거 ‘자본시장 = 소수의 영역’이라는 인식은 빠르게 무너지고 있으며, 시민이 직접 금융 생태계에 참여해 경제의 주체로 서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
 『진보를 위한 주식투자』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정확히 짚어내며, “투자란 곧 참여이고, 참여가 곧 변화”라는 관점을 제시하는 책이다. 저자는 진보적 가치와 금융 행동이 결코 충돌하지 않으며, 오히려 사회 구조의 개선을 위해 경제적 주체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시장을 이해하고 투자에 참여하는 일 자체가 경제 민주화를 이루는 과정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풀어낸다.

스몰 하우스와 슬세권, 주거 패러다임의 대전환



도시는 지금 조용한 변화를 겪고 있다. 과거에는 넓은 평수와 고급 인테리어가 주거의 가치를 결정했다면, 오늘날의 흐름은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스몰하우스**와 슬세권(슬리퍼+세권)이라는 새로운 주거 키워드가 등장하며, 사람들은 더 작고 효율적인 공간을 선택하고, 생활 편의시설이 가까운 입지를 우선 순위에 둔다. 흥미로운 점은 이 변화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구조적 흐름—특히 **1인 가구의 급증**과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1인 가구는 이제 예외가 아니라 표준에 가까워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1인 가구는 이미 전체 가구의 30%를 넘어섰으며, 2030년에는 35% 이상 전망까지 나온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난 이유는 복합적이다.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젊은 층의 증가, 경제적 부담,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가치관, 그리고 중장년층의 독거 가구 확대까지 사회 전반이 ‘혼자 사는 삶’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만큼 주거의 조건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들은 넓은 공간보다 일상에 가장 가까운 ‘생활 반경의 효율성’을 선택한다. 집 안에는 필요한 것만 놓고, 불필요한 면적은 줄인다. 대신 집 밖에는 카페, 편의점, 코워킹 스페이스, 병원, 체육시설 같은 생활 인프라가 슬리퍼를 신고도 닿을 만큼 가깝기를 바란다. 이른바 **슬세권** 입지는 작은 집의 불편함을 보완해주며 생활의 질을 높인다. 스몰하우스와 슬세권의 조합은 “집은 작게, 삶은 넓게”라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가능하게 해준다.

또한 경제적 요인도 큰 몫을 한다. 높은 전·월세 가격 속에서 스몰하우스는 합리적인 선택이 되고, 슬세권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실용적인 해답이 된다.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시간과 에너지의 효율은 곧 삶의 질과 직결된다. 주거는 더 이상 ‘면적 경쟁’이 아니라 ‘생활 동선의 최적화’로 기준이 옮겨가고 있는 셈이다.

이 변화는 도시의 풍경을 바꾸고, 건설사와 지자체까지 새로운 방향을 고민하게 만든다. 소형 평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수요는 여전히 탄탄하고, 동네 중심지 주변에 생활 편의시설이 밀집한 ‘마이크로 커뮤니티’가 부상하고 있다. 도시의 중심은 넓게 퍼지는 것이 아니라, 작고 촘촘하게 집중되는 쪽으로 재편되고 있다.

스몰하우스와 슬세권은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반영하는 지표다. 더 많이 소유하기보다는, 더 잘 살아가는 방법을 선택하는 시대. ‘작지만 충분한’ 공간에서 ‘가까움의 여유’를 누리는 새로운 주거 패러다임이 지금 이 순간에도 확고히 자리 잡아가고 있다.

FSD(Full Self-Driving) 완전 자율주행

FSD, 기술과 규제가 충돌하는 최전선

‘운전자가 필요 없는 자동차.’ 혁신의 상징처럼 들리던 이 말이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테슬라를 비롯한 글로벌 제조사들이 앞다투어 선보이는 **FSD(Full Self-Driving, 완전 자율주행)**은 이동의 패러다임을 급격히 전환시키고 있다. 하지만 기술의 빠른 속도만큼이나, 그 기술을 둘러싼 논쟁도 거세다. 지금 이 순간 FSD는 기술과 규제, 산업과 사회가 격돌하는 가장 뜨거운 현안이다.

자율주행 기술은 국제 표준으로 크게 5단계로 나뉜다. 단순 보조 기능인 레벨2를 지나, 차량이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는 레벨3까지는 이미 상용화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FSD가 지향하는 것은 레벨 4~5, 즉 차량이 전 구간을 책임지고 운행하는 수준이다. 이 단계에서는 인간의 개입이 전제되지 않는다. 그 기반에는 다중 카메라 센서, 레이더, 라이다, 초음파 센서, 그리고 이 수많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신경망 기반 AI(Neural Network)이 자리한다. 시는 도로의 흐름, 보행자 움직임, 신호 변화 등을 360도 시야로 예측하며 매 순간 최적의 주행 판단을 내린다. 기술적으로만 보면 ‘운전자의 역할’을 기계가 전부 맡는 셈이다.

문제는 기술 자체보다 ‘현실에서의 작동 가능성’에 있다. 미국과 중국은 실제 도심에서 자율주행 택시 및 로보셔틀(로봇+버스) 테스트를 확대하며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유럽과 한국은 안전성 검증과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전까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사고 발생 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운전자, 제조사, 아니면 AI 시스템 자체인가—라는 질문은 세계 어느 나라도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는 FSD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법·정책·보험·윤리 전체를 흔드는 구조적 변화임을 보여준다.

게다가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일부 사고는 기술 신뢰도에 대한 회의의 불러일으켰다. 시가 보행자의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을 얼마나 정

확히 판단할 수 있는지, 악천후·야간·도로 마킹 불량 등 비정상 상황에서도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가 핵심 관건이다. 결국 FSD는 ‘완벽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허용 가능한 위험의 기준’을 사회가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어진다.

그럼에도 자율주행 도입이 가져올 변화는 결코 가볍지 않다. 고령화 시대의 이동권 확대, 교통사고 감소, 도시 교통 흐름의 최적화, 물류 체계 혁신 등 긍정적 파급효과가 크다. 반면 운전 직업군의 재편, 차량 소유 개념의 변화,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도 동시에 떠오른다. 결국 FSD는 기술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 전체를 재정의하는 촉매제**다.

완전 자율주행의 시대가 당장 문 앞에 서 있다 말하긴 이르다. 그러나 FSD를 둘러싼 논쟁이 점점 뜨거워지는 이유는 분명하다. 기술은 이미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고, 이제 남은 것은 사회가 이 변화의 속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조율할 것인가이다. 혁신의 가속페달과 규제의 브레이크가 균형점을 찾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운전대를 진짜로 놓을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매일의 질서를 만드는 현관 1㎡의 힘



집이 어지럽혀지는 이유는 의외로 단순하다. 물건이 들어오는 순간 갈 곳을 잃기 때문이다. 물건은 집 안 어디에나 들어오지만, 정작 ‘들어오는 자리’를 정해둔 집은 많지 않다. 그래서 요즘 정리 전문가들이 먼저 손대는 곳이 바로 **투입구(Entry Point)**다. 우편물, 장보기 가방, 택배 박스, 세탁물, 영수증 등 모든 것이 흘러들어오는 관문. 이 작은 구역만 효율적으로 관리해도 집 전체가 들썩이듯 정돈된다.

투입구 정리법의 핵심은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먼저 현관 근처에 바구니나 수납함을 두 개만 둔다. 하나는 ‘즉시 처리함’, 다른 하나는 ‘보류함’이다. 즉시 처리함에는 바로 열어보고 분류해야 할 우편물·택배·영수증이 들어간다. 24시간 내에 비우는 것이 원칙이다. 보류함에는

검토가 필요하지만 당장 결정할 수 없는 것들을 잠시 둔다. 단, 일주일을 넘기지 않는 것이 룰이다. 시간이 지나면 처리 기준이 모호해지고, 결국 ‘정리 대상’이 아니라 ‘짐’이 된다.

현관 옆에 **미니 재활용 스테이션**을 마련하는 것도 좋다. 택배 박스·비닐·완충재를 빠르게 분리할 수 있어, 쓰레기가 집안으로 흩어지는 것을 막는다. 박스를 모아 두었다가 주말마다 한 번에 버리면 공간 효율도 좋아진다. 간단한 도구박스 칼, 가위, 스카치테이프를 현관에 비치하면 ‘되돌아가서 찾는 번거로움’도 사라진다.

투입구 정리법이 좋은 이유는 ‘결정 피로’를 줄여준다는 데 있다. 물건을 어디에 둘지 매번 판단하지 않아도 되니 스트레스가 낮아지고, 정리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무엇보다 “정리하려면 한 번에 크게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사라진다. 집 안의 혼란은 대개 작은 순간들의 누적으로 만들어지지만, 반대로 그 혼란을 줄이는 것도 작은 습관 하나면 충분하다.

정리는 거창한 인테리어가 아니라 흐름을 설계하는 일이다. 물건이 들어오는 지점을 다스리면, 집 안은 자연스럽게 안정적인 리듬을 되찾는다. 오늘부터 투입구 하나만 정리해보자.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질서를 얻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하루 5분 햇빛 쬐기

몸과 마음을 동시에 깨우는
가장 자연스러운 처방



햇빛 아래 잠시 서 있는 일. 너무 단순해서 그 효능을 깊게 생각해 본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면, 무기력, 우울감, 체내 리듬의 붕괴를 되돌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아침 햇빛 5분'이다. 그저 조용히 서 있어도, 걷지 않아도 된다. 단지 빛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내면에서 거대한 변화를 시작한다.

아침 햇빛은 생체 시계를 '리셋'한다. 햇빛에 포함된 청색광은 눈의 망막 신경세포를 자극해 뇌 속 시상하부에 신호를 보낸다. 이때 우리 몸은 '지금 낮이다'라고 인식하고, 밤에 분비되던 멜라토닌 생성을 멈춘다. 동시에 기분을 안정시키고 의욕을 끌어올리는 세로토닌이 분비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햇빛을 받은 날은 괜히 더 활기차고 머리가 맑은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다.

특히 실내에서 대부분을 보내는 사람들이라면 5분 햇빛 쬐기는 필수에 가깝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빛만으로는 부족하다. 직접 바깥 공기와 함께 부딪히는 자연광이 필요하다. 베란다 문을 열고 잠시 서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순간 상쾌한 공기가 피부에 닿고, 차가운 바람이 폐 속 깊은 곳까지 들어오면서 몸이 '깨어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

햇빛은 우리의 뼈에도 영향을 미친다. 짧은 시간의 햇빛만으로도 비타민 D 합성이 촉진되어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근력을 유지하며, 피로감을 줄여준다. 심지어 연구에 따르면 매일 5분만 햇빛을 쬐는 사람들도 뚜렷한 기분 개선 효과를 보였다고 한다.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하루의 리듬이 단단해진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이것이 '아무것도 필요 없는' 루틴이라는 것이다. 운동복도 필요 없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는다. 출근 전에, 커피가 식기 전에, 또는 점심시간에 자리에서 살짝 일어나 잠깐 산책로로 나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짧지만 꾸준한 이 5분의 루틴이 쌓이면, 어느 순간 하루가 달라져 있다. 몸의 온기가 돌아오고, 눈빛이 밝아지며, 마음이 고요해진다. 햇빛 한 줄이 만들어내는 이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크다.

오늘도 어쩌면 복잡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더더욱 잠깐의 햇빛이 필요하다. 5분만, 세상과 햇살 속에 잠시 서 있어 보자. 그 시간이 오늘 하루를 바꿀 작은 기적이 되어 준다.

겨울을 건디게 하는 깊은 온기

쌍화탕 한 잔이 주는 회복의 순간

겨울날, 몸이 괜히 무겁고 손끝이 시리게 차가운 날이 있다. 피로가 쌓여 눈꺼풀이 늘리고, 문득 이유 없는 한기가 밀려올 때 사람들은 종종 쌍화탕을 떠올린다. 약국의 익숙한 병 모양과 뜨끈한 향, 그리고 첫 모금을 넘길 때 목을 타고 내려오는 묵직한 온기. 쌍화탕은 단순한 한방 음료가 아니라 한국 겨울의 상징 같은 존재다.

쌍화탕의 이름은 ‘쌍화(雙和)’, 두 가지를 조화롭게 한다는 뜻에서 왔다. 몸의 기운인 ‘기(氣)’와 피의 기능인 ‘혈(血)’을 동시에 보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처방을 구성하는 당귀, 황기, 작약, 계피, 생강 등은 혈액순환과 체온 유지에 도움을 주는 한약재들이다. 몸 안쪽에서부터 열이 차오르는 듯한 느낌은 단순한 심리적 위로가 아니라 성분이 주는 실제 작용이기도 하다.

특히 현대인의 ‘겨울 피로’와 궁합이 좋다. 추위에 긴장된 근육, 부족한 수면, 잦은 야근과 스트레스는 몸의 에너지 밸런스를 무너뜨린다. 이때 쌍화탕은 기력이 떨어진 몸을 서서히 회복시키며, 차갑게 굳어 있던 어깨와 허리의 뻣뻣

함을 완화한다. 뜨끈하게 달궈진 잔을 양손으로 감싸 쥐고 있을 때 전해지는 온기만으로도 심장이 조금 더 느긋해지는 것 같다.

또한 쌍화탕은 ‘혼자 먹어도 위로가 되는 음식’이라는 점에서 특별하다. 누군가가 따뜻한 한 잔을 건네며 “이거 마시고 좀 쉬어”라고 말하는 장면은 깊은 배려의 상징처럼 느껴진다. 겨울철 유독 마음이 시리는 날, 쌍화탕은 그 자체로 작은 위로의 언어가 된다.

물론 쌍화탕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마법의 음료도 아니다. 하지만 차갑게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잠시나마 풀어주는 쉬어가기의 힘은 분명하다.

한 모금의 온기가 하루의 속도를 잠시 늦추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조용히 채워 넣는다.

추운 겨울, 당신 앞에 놓인 쌍화탕 한 잔이 단순한 음료 이상이길 바란다. 그 안에는 전통의 지혜, 몸을 돌보려는 마음, 그리고 자신을 아끼려는 작은 결심이 담겨 있다.



독자의견

1. (주)라이프하우징 이사 **이형준**

- 경기가 좋지 않아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회원사들을 위해 「부산전문건설-건설대기업 상생데이」같이 좋은 자리 마련 하신거 감사드립니다.
안전관리 노하우에 관한 기사, 자기전 스트레칭도 좋았습니다.
실무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글들 많이 많이 써주십시오.

2. (주)스페이스펀 대표이사 **최운정**

- 늦었지만 대한전문건설협회 설립 40주년을 축하합니다.
코스카레터는 실제로 참여하지 못하는 행사의 소식과 업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사무실에서 접할 수 있게 해줘서 너무 편합니다.
협회 소식이나 협력사 소식도 좋은 내용이지만 이번 46호에는 실내건축에 관한 유권해석 내용이 유용했습니다.
수면습관과 스트레칭도 도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내용 부탁드립니다.

독자퀴즈

코스카레터 잘 읽으셨나요?

**Quiz를 풀고
정답을 맞춰주세요~**



지방계약법 시행령상 보증금 인하(입찰:5%⇒2.5%, 계약:10%⇒5%, 계약이행:40%⇒20%), 검사·대가지급기간 단축 등 한시적 특례의 적용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당초 2025.12.31일까지에서 언제까지로 연장되었을까요?

지난호 독자퀴즈 정답

KOSCA세움정원

지난호 독자퀴즈 정답자 발표

1. (주)송덕 부장 김경숙
2. (주)호산 대리 옥혜정

정답을 아시는 분은 협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를 통해 응모(기간 : 2026. 2. 27(금)까지)하시면 추첨하여(정답자에 한함)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불필요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건설사업자는 필수적으로 기한내에 교육받고 신고하여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지 못해 큰 부담이 되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의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한전문건설협회 홈페이지(www.kosca.or.kr) 및 소통앱인 '코스카톡'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각종 법령정보와 공지내용 등을 파악하여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NO.1

건설업 신규등록 교육 이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

건설업 신규 등록자 교육 8시간 이상 이수(건설업 등록 후 6개월 이내)

▲ 미이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관련 문의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교육센터(edu.kosca.or.kr), 02-3284-1076

NO.2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시행령 제26조]

공사대장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 통보(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 원도급 1억 이상(하도급 4천만원 이상) 도급계약 시

▲ 미 통보시 시정명령(시정명령 미이행시 과태료) 또는 해당공사 완료일까지 미 통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관련 문의 키스콘(cws.kiscon.net) 1588-8456, 대한전문건설협회 02-3284-1010

NO.3

건설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제2항 및 시행령 제12조의3]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법인(주민)등록번호 등) 변경 시 해당 등록관청에 변경 신청(기재사항 변경 후 30일 이내)

▲ 미신고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 관련 문의 본점 소재지 등록관청, 대한전문건설협회 02-3284-1010





2026 Vol.47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30번길 30, 4층(범천동, 전문건설회관)

Tel. 051-633-0260 Fax. 051-633-0261

www.Kosca21.or.kr